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함께의 가치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특수교육

2025

서울특수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창의와 상생의
미래역량 교육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공감과 소통의
찾아가는 행정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부모의 신뢰

함께의 가치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특수교육

함께의 가치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특수교육



가치

- 모두를 위한 보편성
- 어울림을 통한 협력성
- 한 명을 고려하는 개별성
- 뉴 노멀의 미래지향성

추진 체계

가정·학교·지역사회 간
종합적 지원 체계 강화

- ❖ 서울교육방향
- ❖ 서울특수교육방향
- ❖ 2025 서울특수교육 장학 방향

Chapter I

중점 과제별 추진 계획

1. 미래 특수교육 기반 조성	20
1-1. 특수학교(급) 교육 선택권 확대	20
1-2.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24
1-2-1.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24
1-2-2. 특수교육대상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	28
1-3.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31
2.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35
2-1.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35
2-1-1.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5
2-1-2.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및 관리 체계화	40
2-1-3. 에듀테크 기반 교육과정 운영 확대	42
2-1-4. 자율·협력 중심 교원 수업성장 지원	47
2-2. 진로·직업교육 및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50
2-2-1. 지역사회 기반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50
2-2-2.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58
2-3.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 확대	61
2-3-1. 순회교육 운영 내실화	61
2-3-2. 장애 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강화	64
2-4. 특수교육대상학생 안전 강화	70



3. 모두를 위한 협력적 통합교육	74
3-1. 협력 기반 교육과정 중심 통합교육	74
3-1-1. 함께 다지는 통합교육	74
3-1-2. 함께 성장하는 통합교육	77
3-2. 장애공감문화 정착 및 지원체제 강화	82
3-2-1.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정착	82
3-2-2.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86
4. 성장과 발달을 돕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90
4-1. 현장중심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지원체제 강화 ...	90
4-2.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시스템 내실화	95
4-2-1. 더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95
4-2-2.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 및 역량 강화	99
4-2-3. 특수학교 서울형 늘봄 및 방과후·돌봄 지원체제 강화 ...	103
4-2-4.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108

Chapter II

행정 사항

● 행정 사항	114
---------------	-----

부록

특수교육 관련 안내 및 기관 현황

1. 유·초·중·고 특수학급 지원 예산 안내	118
2. 특수교육 관련 안내	119
3. 2025학년도 서울 특수교육 기관 현황	121

학생의 꿈
교사의 금지
부모의 신뢰

2025 서울특수교육

함께의 가치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특수교육

2025 서울특수교육 장학 방향

- I. 추진 근거
- II. 장학 방향
- III. 단위학교 자율장학
- IV. 지구별 특수학교 네트워크 자율장학
- V. 지원장학
- VI. 컨설팅장학
- VII. 특별장학

2025 서울특수교육 장학 방향

- 자발적 참여와 협력적 지원을 통한 학교(급)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 내실있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주요 교육시책 구현

I 추진 근거

- 『교육기본법』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장학지도)

II 장학 방향

단위 학교 중심의 자율 운영 체제 강화

자율과 실천으로
함께 성장하는
특수학교 장학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성장하는
특수학급 장학

단위학교
자율장학

지구별
네트워크
자율장학

지원
장학

컨설팅
장학

특별
장학

Ⅲ

단위학교 자율장학



1. 목표

-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수업방법 개선을 통한 미래특수교육 구현
- 자기 연찬의 풍토 조성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
- 공동 사고 및 협의 풍토 조성을 위한 학교별 자율장학 활성화

2. 방침

- 교육공동체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율장학 운영
- 동학년 협의회, 교과별 연구회, 교원학습공동체 등과 연계 운영
- 교사의 경력 및 능력을 고려하여 임상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 약식장학 등 선택적 적용

3. 내용

- 교사의 내실 있는 수업 전개
 - 충실한 수업 준비와 알찬 수업 전개
 - 교과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방법 전개
 - 자기 수업 모니터링 등 교사별 수업 개선 시스템 개발 및 실천
- 단위학교의 수업 개선을 위한 학습공동체 구축
 - 과정별 협의·연구 및 교원학습공동체 구성·운영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
 - 연간 계획에 의한 체계적 실시 및 실적 누가 기록·비치
 - 내실 있는 수업공개(연구) 실시
- 수업 개선을 위한 자율장학 활성화
 - 주제 중심의 수업 연구 권장

- 과정별 교사 역할 분담 및 협업
- 협의회를 통한 수업 분석 및 환류
- 컨설팅장학지원단을 활용하여 수업컨설팅 실시

-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 상호 수업의 관찰, 결과의 분석 및 환류
- 자율적 동료 장학의 형태로 교과내용, 수업방법, 평가, 학생 관리 등 교수-학습 전반에 걸친 컨설팅 실시

- 경력교사를 활용한 수업코칭 및 연수·연구 활동 활성화
- 자발적인 컨설팅장학(수업컨설팅) 시행 및 지원
- 저경력 및 신규교사 임상장학, 멘토링 강화(교수학습지도, 생활지도, 보호자상담, 학급관리, 수업전문성 등)

● 자기장학

- 자기장학 연간 계획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녹음·녹화를 통한 수업 분석 지원
- 각종 교육연구 대회 및 교과교육 연구 활동 참여 지원

● 자체연수

- 교직원 자체연수 연간 계획 수립
- 정기적인 교내 연수의 정착
-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강의, 실습, 토론, 세미나, 견학 지원

4. 방법

- 학교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행·재정적 지원
 - 『2025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권장사업 ‘교과(학년)협의회 운영’ 참고
- 부서별 협의회, 과정별 협의회 및 교원학습공동체 등 활성화
- 지구별 자율장학회 및 교과교육연구회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
- 교내 자율장학 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 교장, 교감, 수석교사(경력교사), 학년 또는 과정부장교사
 - 역할: 교내 자율장학 계획 수립, 추진, 성과 평가
- 성공적인 멘토-멘티 사례, 공유할 만한 수업자료 및 연구결과물 등 교내 자율장학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 수업 참관 및 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한 교과협의회 실시

IV

지구별 특수학교 네트워크 자율장학



1.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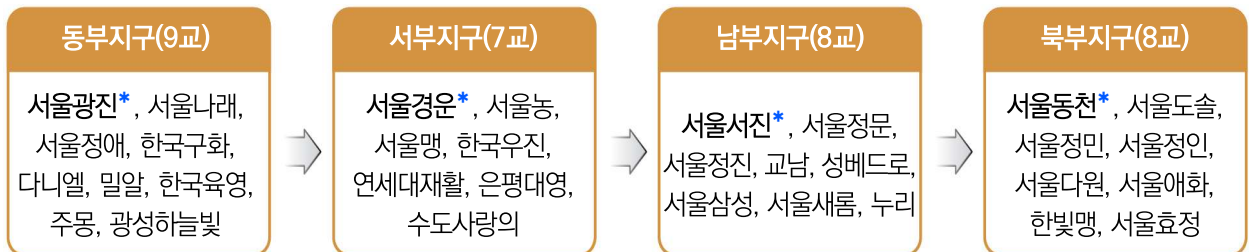
- 지구별 학교 간 협동적 교육활동을 통한 교육력 제고
- 지구별 교육 프로그램 및 우수 교육 정보 공유
- 교육 현안문제 협의 및 해결 방안 모색

2. 방침

- 지구별 교육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활동 전개
- 간사학교를 중심으로 자율장학 사업계획 수립·실천
- 장애영역별 상호 보완 활동으로 특수학교의 교육 질적 수준 향상

3. 내용

- 특수학교 지구별 자율장학 조직



* 지구별 간사학교

4. 방법

- 공개수업 참관, 연구발표회, 교원연수, 교수-학습지도,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통지 방법 등 다양화 방안 공동 모색
- 간사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구 내 학교, 교원 간의 협의로 교육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자율적·창의적으로 추진
- 간사학교는 지구별 자율장학회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분담·조정, 업무 추진 방법, 예산 배정 및 집행 등에 관하여 지구 내 학교와 협의·실천
-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 지구별 현안 협의, 학교 특색사업 공유 중심으로 운영
- 교감 및 보직별 부장교사 협의회 자율 실시

5. 행정사항

- 단위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간사학교 주관(3월 중), <행정사항-서식> 참조
- 사업 결과 제출: 간사학교 주관으로 활동실적을 종합하여 제출, <행정사항-서식> 참조
※ 제출기한: 2025. 12. 19.(금)까지

V

지원장학



1. 목표

- 학교와 교육청 간 소통 강화 및 협력 체제 구축
- 학교 현황 파악 및 서울특수교육 정책의 안정적 정착 지원

2. 내용

- 지원장학 요청 내용 파악: 학교 현안 문제, 교육활동 관련 지원 요청 사항, 우수사례, 건의사항 등 청취
- 학교 현안 및 교육활동 관련 지원요청 사항에 대한 피드백
- 정책 안내: 주요 서울특수교육 정책 안내 및 효율적 추진 방안 협의

3. 방법

- 지원장학 요청서, 교육계획서, 학교 누리집 등 담당 학교 관련 기초 자료 사전 검토 및 숙지를 통한 내실 있는 지원장학 실시
- 정책 추진현황 점검 위주를 지양하고 주제와 소통이 있는 지원장학 실시
- 학교 자율운영체제를 적극 지원하는 교육청의 역할 강조
- 지원장학 결과를 부서에 피드백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하는 적극 행정 추진
- 학교 요구 및 장학 현황을 누적, 관리하여 종합적·체계적 학교 지원

※ 특수학급 지원장학

-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원장학 자체 계획 수립 시 특수학급 장학계획(특수학급 운영 및 통합교육 지원계획)을 포함하고, 학교별 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지원 시 담당 학교의 특수학급을 포함하여 실시

교육지원청 및 학교 시행 사항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 지원장학 계획 수립 시 특수학급 장학계획 포함

학교

- 학교별 사업 추진 현황 및 학교 현황 보고 시 통합교육 및 특수학급 내용 포함

VI

컨설팅장학



1. 목표

- 학교의 자발적 참여 위주의 장학 활동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 현장 중심 장학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장학지원 체제 구축
- 소통·공감·토의·토론을 강조하는 컨설팅장학 활동 전개를 통하여 학교 문화 개선

2. 내용 및 방법

- 학교교육계획에 컨설팅장학 계획 수립: 3월
 - 학교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경영 문제와 학교 현안 진단, 대안 마련 및 문제 해결
 - 학교 자율장학계획 수립 시 컨설팅장학 영역 및 일정 협의
 - 컨설팅장학 운영 예산 편성
- 컨설팅장학 실시: 학교별 자율 실시(필요시 수시)
 - 컨설팅 위원: 컨설팅장학지원단*, 소속 및 인근학교 교원, 외부 전문가 등
 - * 컨설팅장학지원단: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영역: 교육과정, 교수학습, 생활교육, 학교운영 등
- 컨설팅장학 운영
 - 학교평가 결과 분석 → 컨설팅장학위원 위촉 → 컨설팅장학 실시 → 컨설팅장학 결과 보고
 - 학교담당장학사와 일정 및 컨설턴트 구성을 협의하여 위촉
 - 사전협의회, 학교방문 컨설팅장학, 사후협의회 등 실시
 - 학교방문 컨설팅장학 시 교장 및 학교담당(업무담당)장학사 적극 참여
 - 컨설팅 운영 만족도 결과 및 현황 보고: 11월~12월
 - 전 교직원에게 공람 및 환류하고 업무 추진과 학교 운영에 반영

도움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 기구표 - 중등교육과 - 부서업무방

VII

특별장학



1. 목표

- 학교 현안 문제 해결 지원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 학교 현안 발생 시 미비점을 개선하고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의 책무성 제고

2. 대상

-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학교
- 특별 지도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청에서 판단한 학교

3. 세부 추진 방법

- 교육청에서 특별장학 계획 수립 및 장학반 편성 후 해당 학교에 통보
- 특별장학반은 장학 전략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시행

4. 결과 처리 및 환류

- 특별장학반은 장학 종료 후 특별장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장학을 통한 시정 지시(조치) 및 시정결과 보고 포함), 필요시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
- 학교의 현안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현안이 해결되도록 지원
- 장학 종료 후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특별장학 시정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실천 여부를 반드시 점검



Memo

A large, light gra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serving as a memo writing space.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부모의 신뢰

2025 서울특수교육

함께의 가치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특수교육

I

중점 과제별 추진 계획

1. 미래 특수교육 기반 조성
2.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3. 모두를 위한 협력적 통합교육
4. 성장과 발달을 돕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미래 특수교육 기반 조성

1-1

특수학교(급) 교육 선택권 확대



-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
- 특수학교(급)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교육 선택권 확대
-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기회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잠재 능력 계발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제21조(통합교육)
-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제2조(교지), 제4조(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안)』
-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2025~2029)』



주요 내용

가.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기회 확대

- 특수학교 신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학교명	예정지	장애영역	개교 예정
서울동진학교(가칭)	중랑구 신내동 일원	지적장애	2027. 9월
서울성진학교(가칭)	성동구 성수동 성수공업고등학교 폐교부지	지체장애	2029. 3월

- 2040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총 9교 설립을 목표로 하는 「공립 특수학교 중장기 기본계획」(2021년)을 수립하여 설립 지속 추진 중

※ 설립 추진 자치구: 중랑구 (가칭)동진학교(지적장애) 및 성동구 (가칭)성진학교(지체장애)

※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 중랑구, 성동구, 금천구, 양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
(중구는 설립 수요가 적어 특수학교 추가 설립 검토 제외)

〈2025학년도 특수학급 설치 현황〉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2024	138	152	492	855	218	335	104	292	952	1,634
2025	139	153	500	882	222	345	107	299	968	1,679
증감	1	1	8	27	4	10	3	7	16	45

※ 2025학년도 신증설 50학급, 감축 5학급, 순증 45학급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학희망 수요 조사에 따른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 진학수요조사 방식 개선*으로 신·증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절차 모색

* 진학수요조사 방식 개선 사항

내용	기 존(2024년 이전)	개 선(2024년 이후)
진학 수요조사 대상 확대	진학 예정자 - 장애영아 - 만5세 - 초 6학년 - 중 3학년	모든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영아 - 만3~5세 - 초등학교 1~6학년 - 중학교 1~3학년
진학 희망교 기재 개선	기존 특수학급 설치 위주 한정된 학교 선택	특수학급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 선택 가능
향후 5년 이상 진학 희망교 기재로 단계적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당해 수요 파악 예) 초등학교 → 진학 희망 중학교 기재	향후 5개년 수요 파악 예) 초등학교 → 진학 희망 중학교, 고등학교 기재

-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계획(2025~2029)」 추진: 학교지원과
 - 진학수요주소(5개년) 기반 특수학급 수요 해소: 2029년까지 209학급 확대 예정
 - 특수학급 설치 대상 확대 : 학교법인 사립유치원을 특수학급 설치 대상에 포함
 - 사전예고제 도입으로 특수학급 의무설치 실효성 강화

특수학급 설치 사전 예고제

수요 多 학교	5개년 진학수요조사 결과 분석 ▶ 특정 연도 특수학급 필요 예상 ▶ 특수학급 의무설치 대상 학교임을 최소 1년 전 사전 안내
수요 少 학교	5년 내 학급 감축 대상 ▶ 유휴교실을 특수학급으로 활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
↓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소극적 대응학교는 일반학급 감축을 통한 특수학급 설치 유도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급) 다양화·특성화

-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른 설립 추진
 - 설립 목표: 2040년까지 9교 설립
 - 지역별·장애영역별 특수학교 균형 설립
 - 유치원 교육과정만 운영하는 학교, 작은 규모의 특색있는 학교 등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 추진
 - 소규모·단일과정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요구
-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분야 중점 특수학급인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 제공, 인근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직업훈련 및 컨설팅 제공 등 당해 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교육 거점학교로서의 기능 수행

다. 학교장 선발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기회 확대

- 특수교육대상학생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학교

계열	학교명
외국어계열(6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서울외국어고등학교,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계열(1교)	서울국제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15교)	경희고등학교, 대광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보인고등학교, 선덕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신일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현대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의 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4항에 따라 대상 학교 변동 가능

- 특수교육대상학생 정원 외 특별전형 학교

계열	학교명
영재학교(1교)	서울과학고등학교
과학계고(2교)	세종과학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예술계고(6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덕원예술고등학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일반고 중 예·체능계고(1교)	서울미술고등학교

- 정원 외 3% 이내 선발을 통한 특목고 입학 기회 확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 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에 해당하는 학교는 학비 지원 제외
- 입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으로 학교 적응 지원

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대안교육 위탁

-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 후 위탁 의뢰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제공 여부 확인
- 대안교육지원센터(<https://daeancenter.sen.go.kr>)를 통해 위탁 및 복귀 절차와 방법 등 안내
※ 분기별 위탁생 위탁교육비는 교육청에서 위탁교육기관에 직접 교부
-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현황(2024. 12월 기준)

교육 과정	기관명	학급 수	정원	운영기관	소재지	특화프로그램	비고
초	레인보우 예술학교	1	10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서초구	문화예술, 진로	ADHD, 경계선지능, 발달지연장애 초4학년
중·고	꿈더하기학교	2	20	(사)꿈더하기	영등포구	예술특화, 회복프로그램	발달장애
	성모마음 행복학교	2	30	(사)행복한청소년	중랑구	예술치유, 회복성장프로그램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초·중·고	사람사랑 나눔학교	4	60	(재)청소년과 사람사랑	영등포구	감각활성화, 인지개념 확장 진로직업 프로젝트	경계선지능, 발달지연장애
	예룸예술학교	3	55	(사)DTS 행복들고나	노원구	예술특화, 회복프로그램	경계선지능 초5~고3학년
	예하예술학교	3	55	(사)DTS 행복들고나	도봉구	예술특화, 회복프로그램	경계선지능 초5~고3학년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	6	60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용인시	상담·치료, 공동체활동	정서행동장애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	3	30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대구시	상담치료 프로그램	정서행동장애

 **교육지원청 및 학교 시행 사항**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대상학생 진학 희망 및 학교별 학생배치 현황 사전 조사를 통한 배치 여건 및 특수학급 신·증설 여건 파악
-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목적고 특별전형 입학 신청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결과 확인 철저

 **학교**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할 경우 학교관리자, 담임교사, 특수교사, 보호자 등 학교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

1-2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1-2-1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 서울특수교육 전달체계 확립 방안 수립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및 운영 내실화
-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0조(설치), 제61조(특수교육지원센터)
- 『제6차 서울특수교육발전 5개년('23~'27) 계획』



주요 내용

가. 서울특수교육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 마련

- 서울특수교육원(가칭) 설립 준비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
 - 특수교육 현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수교육 지원체계 확립 방안 연구
 -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서울특수교육원(가칭) 설립과 운영 방안 수립

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및 조직

- 교육지원청 소속 11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서울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https://sedu.sen.go.kr/sedu/main.do>) 참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등 상담이 필요할 경우 거주지 행정구역 확인 후,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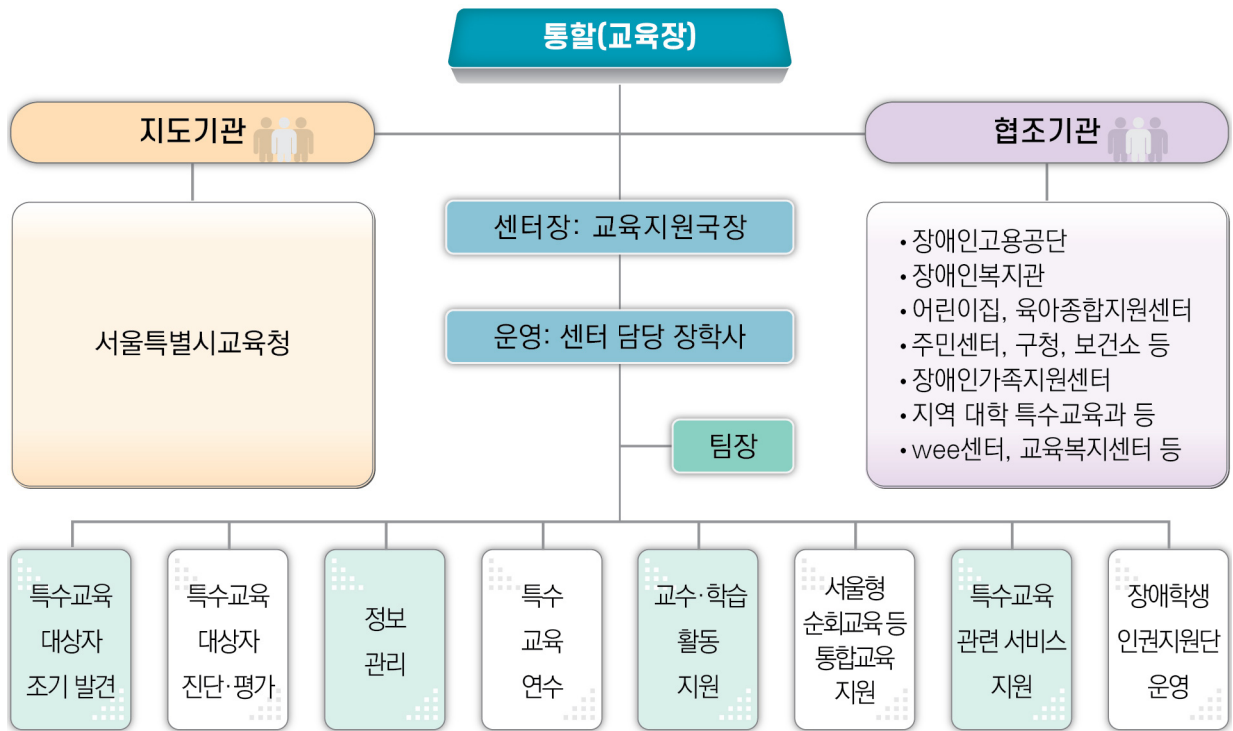


서울특수교육지원센터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현황

순	센터명	위치	전화번호	관할지역
1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목동초등학교	433-4327	동대문구, 종랑구
2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응암초등학교	715-0953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3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영일초등학교	856-2416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4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신상중학교	956-1038	노원구, 도봉구
5	중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청구초등학교	2027-7900	종로구, 중구, 용산구
6	강동송파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중대초등학교	414-2634	송파구, 강동구
7	강서양천특수교육지원센터	강서양천꿈미래센터	2620-2400	강서구, 양천구
8	강남서초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대청초등학교	459-1013	강남구, 서초구
9	동작관악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문창초등학교	833-2895	동작구, 관악구
10	성동광진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행당초등학교	2292-6411	성동구, 광진구
11	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송곡중학교	911-1078	강북구, 성북구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조직 및 기능



※ 특수교육지원센터 여건에 따라 조직 및 기능은 조정될 수 있음

다.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기능 강화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지원을 위한 진단도구, 교재·교구 지원,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 마련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진단·평가팀 구성 및 교육적 진단
 - 지역 내 진단·평가 협력기관 운영을 통한 의료·심리 검사
-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¹⁾ 운영
- 순회교육 및 상담지원 등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운영 및 환경 조성
- 진로·직업교육 기능 강화
 - 진로·직업교육 협의체 구성을 통한 관계기관²⁾ 협력 체제 구축
 - 특수교육대상자의 생애주기별 진로·직업교육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
 -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지원 기능 강화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협력 체제 구축

-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교육울타리 구축
 - 교육(지원)청 내 각종 센터(Wee센터, 서울학습도움센터,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와 협업하여 특수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른 전문적 지원을 위한 자치구, 복지관, 장애인 관련기관, 보육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 진단·평가, 상담,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인근 대학 및 지역 내 인적자원 보유 기관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인력 확보

마.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전문화·특성화

-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전문적 특수교육 지원 확대
 - 장애 유형, 진로·직업교육, 영아교육, 가족지원 등 특성화 사업 운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전문적 지원 강화
 - 특성화 사업 우수사례 공유 및 일반화를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성 강화
 - 특성화 사업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1)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동아리, 보호자교육, 가족체험활동, 형제자매 프로그램 등

2) 특수교육기관, 지역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 2024년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특성화 센터	운영	
시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중부, 강서양천)	학생	시기능 평가, 점자교육, 보행훈련, 교수·학습 자료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비장애학생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시각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사 및 보호자	연수(점자 및 보조공학기기의 이해, 진로·직업), 상담교실, 전문가 활용 컨설팅 상담 등
청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동부, 남부)	학생	쉐어타이핑(속기)지원, 수어 교육 및 통역, 교수·학습자료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비장애학생	장애이해교육 및 수어교실(기초수어, 인공와우, 에티켓 등)
	교사 및 보호자	보호자 멘토링, 교사 연수, 전문가 활용 컨설팅 상담, 진로코칭 및 진로체험활동 등
지체중복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북부)	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진로상담 및 대학 진학 상담
	비장애학생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지체중복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사 및 보호자	전문가 활용 현장 컨설팅, 연수, 교수·학습자료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바.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 교육 현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물리적 환경 개선
 -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및 전담인력 대상 실무중심 맞춤형 연수 강화,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 인센티브: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 학습휴가, 전보 우대(초), 유연근무제 실시, 전문직 선발 시 가산점 부여 등

 교육지원청 및 학교 시행 사항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센터 운영 관리 철저
-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부서) 협조 체계 구축
- 특수교육지원 관련 안내 및 홍보 강화
 - 특수교육 관련 기초 정보,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보 및 홍보 리플릿 제작
 -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등 관계기관에 배부하고 모든 관계자에게 적극 홍보
 -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특수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상시 홍보

 도움자료

-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길라잡이(개정판)」(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1-2-2

특수교육대상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운영 내실화를 통해 교육기회 확대 및 체계적 지원기반 마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0조(설치), 제61조(특수교육지원센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4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주요 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체계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및 교육 이력 등에 관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연계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업무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학 업무를 위한 나이스 활용
 - 나이스 서울특수교육 배치시스템 각급 학교 적용
 - 특수교육대상자 이력 관리를 통한 배치 계획 및 정책 수립

나. 장애의 조기발견 및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진단·평가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안내 및 진단·평가 실시
- 진단·평가 전문기관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협력 체계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 협력 병원 및 진단·평가 전문기관 지정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진단·평가 시행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담당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애 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활용 및 심리검사 결과분석 등 맞춤형 연수 실시

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준수



※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되지 않도록 지침 준수 및 관리 철저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대상자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회의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재취학 등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³⁾
 -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보호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취학유예 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중지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교육지원청 및 학교 시행 사항

교육지원청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내실화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전문성 강화
 - 상담 및 면담·관찰, 협력기관 등을 통해 진단·평가 대상자에 대한 교육적·의료적 진단 실시
 - 진단평가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 진단·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외에 보호자·담임교사로부터 과도한 구비서류 요구 지양
- 어린이집 재원 특수교육대상영유아 정보관리 강화 및 치료지원비 제공
- 나이스 배치시스템을 활용한 진학업무 처리




학교

- 각급학교 진학 시 나이스 배치시스템으로 서류 제출

도움자료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도움자료(개정판)」(서울특별시교육청, 2025)

1-3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강화
-  영유아 단계부터 시작되는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 강화
-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4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주요 내용

가.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강화

-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를 위한 지역 내 병원, 보건소, 기타 관계기관과의 정보전달 협력
 - 영유아 건강검진(4~71개월)부터 장애 진단 등록단계까지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 * 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보건복지부(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장애(위험) 자녀 양육 정보 제공 확대 및 부모 양육 자료 보급 및 활용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www.nise.go.kr/onmam)활용
 - 서울학부모지원센터(parents.sen.go.kr)를 통한 보호자 정보 접근성 향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홍보 리플릿, 부모교육 및 상담,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 교육 홍보
- 특수교육 관련 정보 안내, 홍보 및 간편 상담을 위한 SNS 채널 운영 예정
 - 양육정보 및 특수교육 관련 간편 상담을 위한 SNS 채널(서울특수교육 정보 우체통) 개발 및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역 내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 누리집, 공문, 기관 방문,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 안내 강화

나. 장애영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교육받을 권리와 그에 관한 다양한 정보에 관하여 적극 안내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관내 특수교육기관 정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가족지원 등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
 - 학기 중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영아는 수업일수 150일 미만이라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특수교육대상영아는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 중복 지원 가능⁴⁾
-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교실 운영
 - 특수교육대상영아의 발달 특성과 흥미를 고려한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 특수교육대상영아의 연령, 장애 유형, 가족의 형태와 상황에 따른 조기중재 방안 마련
 - 특수교육대상영아 보호자와의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한 교육 협력자로서의 유기적 관계 도모
 - 보호자의 교육적 요구 조사, 조기중재 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
 - 특수교육대상영아의 가족 중심 체험 및 놀이 지원을 위한 통신교육 자료 개발
- 특수교육대상영아의 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수립·실행 지원
-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순회교육 지원
- 장애영유아 담당교원의 장애(위험)영유아 선별 및 조기지원 등 특수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 교육지원청 단위로 해당 지역의 '육아정보센터'와 협조하여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소속 교사 대상 연수 실시
-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지원, 양육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 부모 상담 및 특수교육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 공유, 유치원 방문 상담 등 교육권 선택을 돕기 위한 다양한 초기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대상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운영

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이음교육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영아에 관한 이력 관리 강화 및 일반·특수교사-학부모 간 특수교육대상유아 관련 정보 공유
- 특수교육대상(예정)유아 국공립유치원 유치원 사전 배치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개통 이전까지 특수교육대상유아 우선 배치
 - 우선 배치기간 이후 특수교육대상(예정)유아의 추가 배치 수요 발생 시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고, 해당 유치원에 안내
 - ※ 유치원 학급 편성 시,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일반학급의 정원 내 편성(국가인권위원회, 2017)
- 가정-유치원-초등학교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 입학 전 사전상담, 학부모 설명회, 선후배 부모 간담회 등을 통한 입학 전 적응 지원 프로그램
 - 교육과정 내 초등학교 학교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의 입학 초기 적응지원 프로그램

4)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의 상실) (2020. 8. 7.)
수급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양육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장애영아(만 3세 미만)는 예외로 한다.

- 특수교육대상유아 학적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및 관리
 - 나이스에서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및 유치원 특수학급 소속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학적 등록 및 관리
 - ※ 유치원 나이스 사용은 '유아나이스(<https://www.uaneis.kr>)' 참고
- 취학의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 장애를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유예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안내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취학유예·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등·하교 및 순회교육 가능성, 보호자 의견 등 고려
 - ※ 취학의무 유예 후에는 재취학 시까지 특수교육 지원이 보류됨
 -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의무교육 홍보 강화
 - ※ 3~5세까지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

교육지원청 및 학교 시행 사항

교육지원청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상시 홍보
 -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조기 발견 및 교육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절차, 교육지원 등에 관한 정보 안내
-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정보전달 협력 대응
-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취학 절차 및 교육 지원 내용 안내
-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소속 직원 대상 연수 희망 조사 및 상반기 내 연수 실시

학교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및 유치원 특수학급 소속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학적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등록 및 관리
- 특수교육대상유아 이음교육 운영 현황 조사('25. 1.)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특수교육 만족도 조사('25. 11.)

도움자료





-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관련 정보 및 학부모 지원 자료
 - 학부모온누리 누리집(www.parents.go.kr)
 -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www.nise.go.kr/onmam)

제목	내용
부모지원 가이드	영유아 발달 및 장애진단, 교육·복지 제도, 권리옹호, 의료서비스, 재활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교육지원, 행동지원, 장애영역별 종합지원, 가족지원
부모자조모임	협동조합 정의와 원칙,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부모 협동조합 운영사례
긍정적행동지원	가정에서의 긍정적행동지원 이해, 양육스트레스 대처법, 청소년기 자녀 양육 기술 및 행동지원
생애주기별 가이드북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건강교육	체중관리, 건강한 생활습관, 척추측만증, 자아존중감, 장애인 건강주치의
행동지원	행동과 행동중재, 행동의 기능, 행동 지도방법, 생활속 긍정적 행동 지원
교육·복지제도	생애주기별 주요제도, 발달장애인 지원제도
기관 정보	교육기관, 복지기관, 의료기관
기타	관계법령, 보도자료, 자료실 등

●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중심 통합교육(유치원, 1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발견 및 선정, 놀이특성, 협력교수, 부모 상담 방법,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초등학교 입학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8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놀이, 놀이 관찰과 기록, 놀이를 통한 장애공감문화 형성, 협력교수 운영, 중도중복장애유아의 놀이 등 	

● 국립특수교육원 개발 자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놀이 지원 자료집(1~6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장애 또는 발달지체 등의 이유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유아가 교육과정에 잘 참여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장애유아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집(10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아를 지도하고 있는 일반 유아교사 및 보육교사가 통합교육 환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의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 분석을 통해 안내자료(2책), 테마별 활동자료(5책), 지원자료(3책)의 총 10권의 자료집 	

● 장애유아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 자료 탑재: 에듀에이블(www.eduable.net)-수업지원자료-교수·학습자료



에듀에이블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2-1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2-1-1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실행력 강화 지원
-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특수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지원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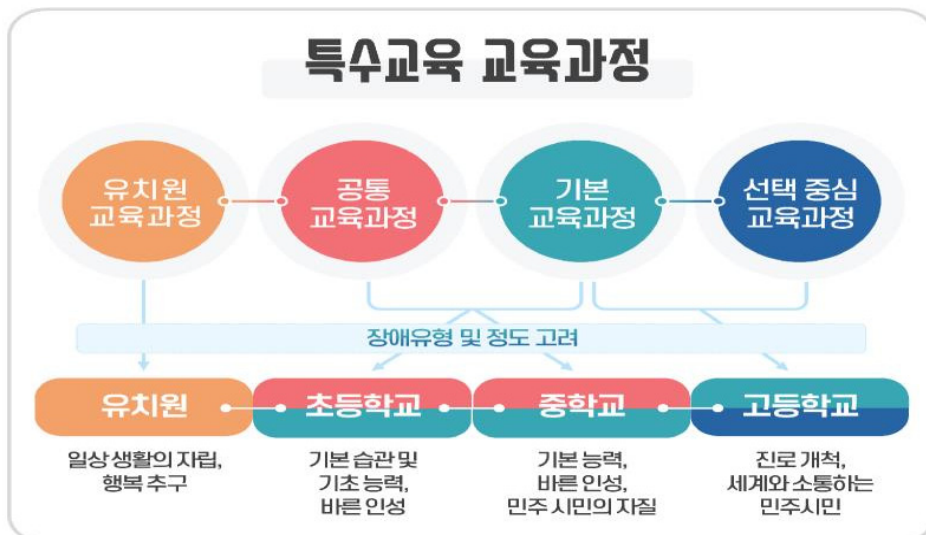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5조(순회교육 등)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서울특별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서울특별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주요 내용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체계 및 교육 목표

-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기본 교육과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



나.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차별 적용 대상

구분	학년(군)	'24년	'25년	'26년	'27년
유치원	3~5세	적용			
초등학교	1~2	적용			
	3~4		적용		
	5~6			적용	
중학교, 고등학교	1		적용		
	2			적용	
	3				적용

※ 2025년 적용 대상학년: 유치원, 초1~4, 중1, 고1

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 서울특별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4-14호)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초(1, 2학년군) 일상생활활동 편성 및 운영 지원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강화
 -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단 운영 및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운영
 - 교육지원청별 특수(통합)학급교사 교육과정 디자인 전문성 향상 연수 운영
-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통합교육용 교수·학습자료 등 활용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통합교육 계획 포함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권장
-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지원⁵⁾

라. 특수학교 교과(군)별 시수 편성 및 고교학점제 운영

- 교과(군)별 수업 시수 증감 편성·운영
 -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초1~4, 중1, 고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일부 개정(공포 '20. 10. 20. 시행 '21. 4. 21.)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군)별,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간 50%, 공통 교육과정은 교과(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가능, 다만 체육, 예술(음악, 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 감축 불가

• 【초5~6, 중2~3, 고2~3,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군)별 30%, 공통 교육과정은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가능, 다만 체육, 예술(음악, 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 감축 불가

- 중도중복장애학생(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포함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 【초1~4, 중1, 고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운영 가능

• 【초5~6, 중2~3, 고2~3,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운영 가능

- 고등학교 과정에 교과중점학교(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운영

• 교과(군)별 이수 학점의 50% 범위 내에서 감축하여 체육, 예술(음악/미술), 진로와 직업 교과로 편성 가능

•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이수 학점을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음

• 【고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 (기본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학 점의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중점교과로 편성하도록 권장

→ (선택 중심 교육과정) 자율 이수 학점의 30% 이상을 해당 교과(군)의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권장

• 【고2~3,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 (기본 교육과정)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중점 교과로 편성 가능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따른 학점 편성 기준 준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따른 학점 편성 기준

▶ 기본 교육과정 운영 특수학교

구분	'25~
총 이수학점	192학점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비중	교과 134, 창체 26 일상생활 활동 32

1학점 수업량은 50분 기준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

▶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특수학교

구분	'25~
총 이수학점	192학점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비중	교과 174, 창체 18

1학점 수업량은 50분 기준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 단, 1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마. 단계별 진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급 간 진로연계교육 강화

- (유치원 5세)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 (초등학교 1-1) 학교 이해와 정서 지원, 기초학습 이해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이해와 정서 지원, 진로 인식 지원
- (중학교) 자유학기제+진로연계교육(중3, 2학기) 진로탐색지원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2025년부터 학기제로 전면 전환
- (고등학교) 사회 전환 지원(체험중심 진로교육), 대학 진학 지원(고1-1 진로설계 집중학기)
- (전공과) 사회 전환 지원(지역사회 전환 지원), 대학 진학 지원

바.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 특수학교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장학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컨설팅장학지원단 활용
 - 교육과정지원단을 활용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점검 및 컨설팅 실시
 - 특수학교 신규·저경력 교사 지원 연수 및 멘토링 계획 수립
 -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학부모 상담, 학급 운영 등 멘토링 강화
- 교육지원청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초·중등교육과 공통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관련 연수 개설 시 특수교사 참여
 - 교육과정지원단을 활용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점검 및 컨설팅 실시
 - 학교 요구에 따른 교육과정, 생활지도 등 영역별 지원
 - 신설 특수학급 및 신규 교사 근무교 지원장학 권장
 - 저경력·신규교사 대상 연수, 멘토링 권장(컨설팅장학지원단, 교육과정지원단, 통합교육지원단 활용)



교육지원청 및 학교 시행 사항

교육지원청

-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 교육지원청별 신규 및 저경력 교사 연수 및 멘토링 계획 수립
- 공통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교수·학습 관련 연수 시 특수교사 참여 안내


학교

-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 운영: 2025. 1월~2월
- 『서울특별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 총실
- 특수학급 설치 학교는 특수학급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도움자료**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발달단계별 교육과정 운영지원 자료」(국립특수교육원, 2021)
-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놀이 지원 자료」(국립특수교육원, 2021)
 - 자료 탑재: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 - 수업지원자료 - 교수학습자료
-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평가준거 성취기준 풀(POOL)」(국립특수교육원, 2020)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고등학교 과목별 성취수준 개발 자료」(경상남도교육청, 2023)
- 「장애학생 통합교육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평가 자료.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국립특수교육원, 2024)
- 「장애학생 통합교육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평가 자료. 2022 개정 공통 교육과정(초등학교)」(국립특수교육원, 2023)
- 「배움으로 성장하여 나눔으로 실천하기(2021 교육과정 재구성 템플릿)」(서울특별시교육청, 2021)
- 「장애학생을 위한 교과연계 교수·학습 보완자료(교육과정 재구성)」(국립특수교육원, 2021)
 - 자료 탑재: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 - 수업지원자료 - 교수학습자료 - 교수학습자료(ebook)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경상남도교육청, 2023)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가이드북」(경상남도교육청, 2023)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기본, 선택)」(경기도교육청, 2024)
- 『각급 학교 교구 기준(특수학교·특수학급)』(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19-22호, 2019. 12. 12.)
 - 자료 탑재: 서울시특별시교육청 - 특수교육과 - 부서업무방

2-1-2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및 관리 체계화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성과 제고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2조(개별화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주요 내용

가.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구성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시 일반교육교원의 참여 및 역할 확대
-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학생의 인적사항과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 포함
 - ※ 치료지원, 학교 내 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시 지원 사항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 작성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일반교육교원, 보호자 참여를 위한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 준수
-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합학급 교사와 공유
- 전학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인근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컨설팅 및 협력 확대)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관련 보호자 동의 절차 준수
 - 나이스 기반 개별화교육계획 적용 시 보호자 동의 후 시행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행동중재가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행동중재 지원 사항 포함하여 작성⁶⁾

6)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34호)' 제15조 제3항

나. 개별화교육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방법이 포함되도록** 개별화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
-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실시⁷⁾
- 교육과정 및 교과 특성,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른 다양한 학생 집단 편성에 활용
- 특수교사, 일반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 학교 구성원과 함께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 제공
- 나이스를 활용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개별화교육계획영역관리' 메뉴를 활용하여 교과 영역 외 생활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작성 가능

교육지원청 및 학교 시행 사항

교육지원청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인근 특수학교(급)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관리 강화
- 학교급별·교과별 개별화교육 관련 우수사례 공유
-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점검 강화

학교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시 일반교육교원의 참여 및 역할 확대 방안 강구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관련 연수 및 컨설팅장학 강화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일반교육교원 및 학부모의 참여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절차 준수

도움자료

-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가이드북」(국립특수교육원, 2019)
- 자료 탑재: 국립특수교육원 - NISE발간물 - 교육과정정보고서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가이드북

7)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19. 10. 23.): 발달장애학생의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구체적 지원방법이 포함되도록 개별화교육을 개선하기 바람

2-1-3

에듀테크 기반 교육과정 운영 확대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및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디지털 핵심 역량 강화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제50조(정보격차 해소교육의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7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주요 내용

가.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 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에듀테크 교육 환경⁸⁾ 구축 및 기기⁹⁾ 확충
-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에듀테크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 마련
 - 신기술 기반 에듀테크 활용 환경 구축 및 기기 확충 지원
 - 인공지능 활용 미래교실 운영 학교 선정 및 지원: 2교
- 일상생활 속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료* 활용
 - * 비대면(예:무인정보단말기) 서비스, 온라인 생활서비스(예: 증명서 발급) 활용 등
- 에듀테크 활용 특수교사 연수 확대 운영
 - 메타버스, 실감형 콘텐츠 활용, SW·AI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료 활용 등
 - 특수학교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활용)
 - AIDT거점형 연수
 -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 중심 통합교육 연수
 - 디지털 교육혁신 핵심교원 양성 연수

8) 에듀테크 교육 환경: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스마트 미래교실, AI 활용 교실 등

9) 에듀테크 교육 기기: AI 학습보조 로봇, 실감형 콘텐츠 체험기기, AI형 스마트 기기 등

- 지역·민간 인프라와 연계한 체험형 디지털 교육(SW·AI) 프로그램 제공 확대
 - 지역 SW교육기관 방문,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등

- 특수교육 학습공유공간 **SELCO** 운영 활성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활용
- 원격수업 지원: SELC 유튜브 채널
- 유용한 어플리케이션 정보 공유: 교과 학습 연계, 보완대체 의사소통, 게임, 코딩,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실감형 콘텐츠 등
- 정책 사업 홍보 및 자료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 강화



특수교육 학습공유공간 (SELCO)

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 기본교육과정 일상생활 활동 VR 콘텐츠: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www.eduable.net)

- 신체활동, 여가활동

- 혼합수업(블렌디드 러닝) 및 원격수업을 위한 공공 플랫폼 활용 : NEW 서울교육포털(SSEM)

-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뉴쌤(newSSEM) 활용

- 참여형 학습 커뮤니티 구성 및 협력학습 지원 온라인 도구
- 학습경험의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등 수업 혁신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플랫폼 활용(2022~)

- 실시간 음성 인식·자막 지원, 개별 화상수업 등 기능을 지원하는 교육 플랫폼 : 열린배움터(class.nise.go.kr)

- 국립특수교육원 디지털 교육 콘텐츠 활용: 에듀에이블(eduable.net)

- 멀티미디어북,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실감형(AR/VR) 교육자료, 무인정보단말기 교육자료



일상생활 활동 VR 콘텐츠



열린배움터



에듀에이블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열린배움터)

<p>열린배움터 메인화면</p>	<p>열린배움터 소개 (기능 및 주요 서비스)</p>	<p>사용자별 기능 안내 (교사, 학생, 학부모)</p>

다. 일상생활 디지털 접근성 교육 활성화

- 메타버스 활용 교육활동 다양화
 - 교과교육 연계 활동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활용
- 정보 접근 및 정보화 교육 실시
 - 키오스크, QR코드, 모바일 앱 활용, IoT 환경제어기기 활용 교육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정보화 능력 신장을 위한 장애 유형별 정보화 교육의 예

장애 유형	정보화 프로그램 접근 방법 및 정보화 교육의 예
지체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이스틱, 터치모니터, 킹 키보드, 각종 스위치, 각종 마우스 등 컴퓨터 보조기기 활용 • IoT 환경제어 기기 활용 교육 • 인터넷 검색, 파워포인트(ITQ), SW코딩 등
시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서리더기, 휴대용 독서 확대기, 음성출력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 활용 • 점자정보단말기 타자검정, 엑셀(ITQ) 등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기기를 활용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교육, 기능적 의사소통훈련 등 • 정보화 교육을 통한 기초재활훈련과 pc활용 능력 증진 • 아래한글(ITQ), 파워포인트(ITQ), 로봇 코딩, SW코딩, 스마트 검색, 동영상 제작 등
청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문자변환 소프트웨어(소보로 등), 문자 통역 활용 • 아래한글(ITQ), 로봇 코딩(DASH) 등

- 에듀테크 기반 체험 기회 제공
 - 국립특수교육원 운영 '찾아가는 상상 체험버스', '실감형 체험교실' 활용
- 진로·직업교육 디지털 환경 지원
 - 고등학교·전공과 과정 운영교 7교 내외, 교당 30,000~50,000천원 차등 지급
 - 디지털 시대 속 교육현장 변화에 따른 미래 특수교육 교육환경 구축
 - 변화하는 디지털 교육 정보 기술을 활용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및 교육환경 지원

교육지원청 및 학교 시행 사항

교육지원청


- 특수학교(급)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환경 개선, 정보화 기기 보급 등
- 특수교사의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연수 운영, 연구회 지원 등

학교

-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참가 협조

도움자료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 탑재 자료

자료명	자료 내용	자료 탑재
멀티미디어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및 공통 교육과정 교과* 기반 영상·애니메이션 등 멀티미디어 교육콘텐츠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진로와 직업,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에듀에이블 (eduable.net) > 수업지원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 코딩 및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메이커융합 및 시용합교육 지원 자료 	에듀에이블 (eduable.net) > 에듀테크  에듀에이블
실감형(AR/VR) 교육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교육과정 교과* 기반,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교육콘텐츠 * 과학, 일상생활(신체·여가) 활동 	
무인정보단말기 교육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연계, 다양한 업종*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활용 교육콘텐츠 * 공공기관, 유통점포, 문화생활시설, 의료기관, 요식업, 교통 	

- 특수교육 학습공유공간 **SEL C** (sites.google.com/selc.sc.kr/selc/)
- 국립특수교육원 열린배움터 (<https://class.nise.go.kr>)
- 디벗 관련 자료

순	자료명	자료연결정보	QR코드	영역
1	「디벗」을 소개합니다.	youtu.be/tkzlpzrX2FM		정책안내
2	학생·학부모 「디벗」 활용 가이드라인	youtu.be/WYAIJIFWVDk		가이드라인 안내
3	궁금해요, 「디벗」	youtu.be/6rBHdPiDzoU		학생·학부모 Q&A
4	「디벗」과 함께하는 하루	youtu.be/vcBds5oxyC0		정책안내
5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워요	youtu.be/HugngdgpPAw		디지털 역량 개발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종목




-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서울특별시 예선 대회’에 참가하여 선정된 학생이 전국대회 출전
 - 과정별 종목 참여 대상이 다르고 종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2025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경기 종목 안내’ 공문 참고
 -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서울특별시 예선 대회’ 안내 예정(5월 초 통합게시판 대회 공지 참고)

〈정보경진대회〉

학교(급)	장애유형	종목(정식 16개, 시범 2개)
특수학교	발달장애	아래한글(ITQ), 파워포인트(ITQ), 로봇코딩(터틀), 동영상 제작
	시각장애	점자정보단말기 타자검정
	시각장애(맹)	엑셀(ITQ)
	청각장애	아래한글(ITQ), 로봇코딩(DASH)
	지체장애	파워포인트(ITQ)
특수학급	발달장애	아래한글(ITQ), 스마트 검색, SW코딩, 동영상 제작
	지체장애	SW코딩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발달장애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지체장애	인터넷 검색
	지체장애 (보조공학기기)	SW코딩 (시범종목)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등*	시각장애 (저시력)	엑셀(ITQ) (시범종목) * 일반학급 배치 시각장애학생 포함

※ e스포츠대회 종목은 대회 주관 기관의 안내에 따름

2-1-4 자율·협력 중심 교원 수업성장 지원

-  개별 맞춤형 미래특수교육 실행을 위한 교사 교육과정 수업 전문성 강화
-  특수학교 수업성장 네트워크, 수업나눔교사단,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한 협력적 연구 문화 조성 및 교수·학습 개선 선도
-  소통과 협력 기반 교원 수업성장을 위한 수업나눔 활성화

 근거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 교육감 공약사업: [1-1-5]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 및 맞춤형 지원

 주요 내용

가. 교사 교육과정 디자인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연수 확대

- 교사 교육과정 전문성 강화 연수 운영
 - 저경력(3년 이하) 교사 대상 수업 성장 자율연수: 4~6월
 - 교직원계별(30년 이상) 직무연수 운영: 9~10월, 20명 예정
 - 수업나눔 워크숍/직무연수: 8월, 30명 예정
 - 교육과정 및 수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교육과정 개발 지속
- 교육지원청 주관 특수(통합)학급 교사 교육과정 디자인 연수
 - 특수교육과: 연수 운영을 위한 예산 및 꾸러미* 지원
 - * 연수 주제별 강사 인력풀, 다양한 연수 운영 사례, 교육과정지원단 공동 강의안 등
 -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지원과: 연수 대상자 의견수렴을 통해 자체 연수 계획 수립·운영

나. 스스로, 함께 연구하고 성장하는 교원 공동체 운영 및 지원

- 특수학교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특수학교 수업성장 네트워크 구성·운영
 - 소통·나눔·배움을 통한 협력적 문제해결 및 동반성장 지원
 - 분과 구성: 발달장애(신청 현황에 따라 권역별 분리), 시각·청각장애, 유아학교
 - 공동의 전문성 향상 및 사례 공유를 통한 수업성장 기반 조성
 - (예) 학교 특색 교육활동 주제 탐구, 수업나눔 활성화 방안, 교원 수업성장 지원을 위한 동료장학, AI·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디지털 교과서(AIDT),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설계 등
 - 수업개선을 위한 분과별 연구 결과의 공유활동을 통한 성과 확산

- 수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수업나눔 교사단 구성·운영
 - 목적: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수업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수업나눔 문화 조성 견인
 - 구성: 국·공·사립, 학교(급), 자격(유·초·중등),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모 및 심사 선정
 - 역할: 공동 연구활동 및 단위 학교(교육지원청) 중심의 수업나눔 지원
 - (예) 수업나눔 초보자를 위한 수업나눔 이해 카드뉴스 제작, 수업자의 자기 이해 및 정체성 확인을 위한 질문지 만들기, 수업나눔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준비를 위한 집중 워크숍 운영, 수업나눔 안내자 역할 수행 등
- 협력적 연구 활동을 위한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내실화
 - 1영역(특수(통합)교육 교원학습공동체) 2개 공동체 운영 (※ 상황에 따라 확대 운영 가능)
 -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위한 자발적 협력 연구 과정 지원
 - 공동체 간 소통과 정보 교류를 위한 교원학습공동체 대표자 협의체 운영
 - 수업나눔축제와 연계한 전시회를 통한 교원학습공동체 간 연구 과정 및 성과 공유

다. 협력적 수업 성장을 위한 수업나눔 활성화

- 특수학교 교장(감) 수업혁신 워크숍 운영 : 연 1회
- 특수학교 자율장학회와 연계한 수업나눔 활성화 지원
- 특수교육 수업나눔축제 운영: 11월
 - 교원 상호간의 교류 활동 및 사례나눔을 통한 소통·나눔·배움의 협력적 성장 지원
 - 교육지원청별 수업대화 및 수업나눔 과정 협력 운영
 - 주제 탐구, 수업 대화, 수업 나눔을 통한 수업 전문성 강화
 - 특수학교 수업성장 네트워크 및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공유활동을 통한 협력 성장

교육지원청 및 학교 시행 사항




교육지원청

- 특수학급 교사 대상 교육과정 디자인 전문성 강화 연수 실시
-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교원의 현장 요구에 따른 맞춤형 연수 운영
-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의 신규 및 저경력 교사에 대한 멘토링제 운영 강화

학교

- 수업나눔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권장
- 학교 단위 수업나눔축제 나눔·참여 독려
- 단위학교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한 특수교육교원 회복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노력

 **도움자료**

자료명	자료 탑재	QR코드
'현장특수교육' 웹진	국립특수교육원 - NISE발간물 - 간행물	 현장특수교육
에듀에이블 수업지원자료	국립특수교육원 - 에듀에이블 - 수업지원자료	 에듀에이블
교원학습공동체 길라잡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 - 교학공 직무연수 - 연수공지사항	 학교혁신 지원센터

2-2

진로·직업교육 및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2-2-1

지역사회 기반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진로역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미래생활 역량(자립생활 및 직업재활 역량 등) 강화
- 개인의 진로 희망에 따른 사회참여 기회(진학, 취업, 평생교육 참여 등) 확대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 『진로교육법』 제18조(진로체험 지원), 제9조(진로전담교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진로전담교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조(학생의 진로지도), 제36조(학교기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등)~제41조(학교기업 운영 세칙)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제25조(지도·점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현장실습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주요 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역량¹⁰⁾ 강화를 위한 개인별 진로설계 및 진로·직업교육 계획 수립
- 진로·직업교육 연수 및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등을 통한 특수교사의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역량의 체계적 관리
 - 『장애학생 교과연계 전환역량 향상 프로그램 지원 체계 NISE-TEEMH¹¹⁾』 활용
 - 학생의 특기·적성·흥미, 요구수준에 따른 진로설계 및 진로·직업교육 계획 수립
 - 나이스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¹²⁾ 활용으로 개인별 진로·직업교육 이력 체계적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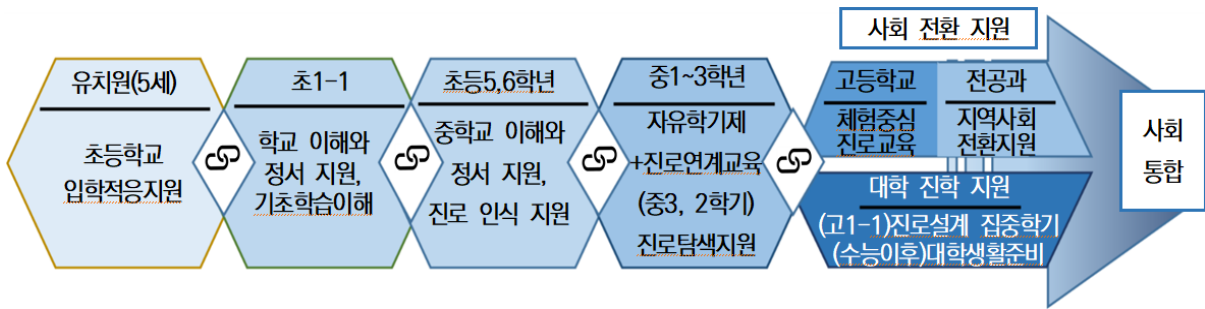
10) 자신의 진로적성·흥미, 특기 등이 무엇인지 알고 학교 졸업 이후의 성인기 삶에 대한 자신의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11) 국립특수교육원, 2023

12) 3개 부처(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진로취업 사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장애학생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를 일원화하여 맞춤 서비스 제공

나. 맞춤형 진로교육 연계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와 진로·적성에 따른 맞춤형 진로교육 연계 강화
 - ‘진로인식 → 진로탐색 → 진로설계’의 단계별 진로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급 간 진로교육 연계* 활성화
 - * 학교급 간 진로교육 연계: 초등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중학교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직업교육, 현장실습 등과 연계 운영
 - 학교급간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맞춤 진로설계 및 진로체험활동 운영
 - 학교에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고등학교 전환학기¹³⁾(3학년 2학기), 현장실습 중심의 전공과 특화 교육과정 등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능
 - 자립생활훈련·직업재활훈련 제공을 위하여 내실 있는 전공과 운영 관리 철저¹⁴⁾



다. 진로전담교사 전문성 강화 및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 진로전담교사 전문성 강화
 -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수업(주당 10시간 이내)
 - 진로·진학 관련 학생 및 학부모 등 상담(주당 평균 8시간 이상)
 - 현장중심 맞춤형 진로설계 및 탐색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 교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연수 및 컨설팅
-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
 - 진로교육연구회 및 자율협의체 운영으로 진로교육 수업 탐구활동 전개 지원
 - 진로교육 관련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관리
 -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13) 학생의 진로희망에 따라 실무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 현장실습 수업 등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학기 운영 시 취업과 관련된 실무 내용 중심의 교육과정, 현장실습 과목 등을 편성하여 중점 이수 가능

14) 「특수학교(급) 전공과 교육과정 운영 도움서 1~2권」(국립특수교육원, 2019), 「전공과 운영 도움자료」(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활용

라. 지역사회 기반 진로·직업교육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과 안전이 강화된 현장실습 운영 철저
 - 현장실습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체계 구축
 - 3주 이상(권장) 현장실습 기간 중 참여 실습생 및 현장실습 기관을 대상으로 반드시 1회 이상 방문 순회지도 실시
 - 진학 및 취업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교내 현장실습 운영 또는 적극적인 전환계획 수립
 -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교내·외 프로그램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 보호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진로와 직업) 운영 내실화
 - 현장실습을 조기취업이 아닌 직무체험 등을 통한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지침』
 - 『서울특별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지침』,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 근거하여 운영
 - 단위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실습처 선정 심의,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사후관리 등 현장실습 계획·운영 전반 협의
 - 직업계 고등학교¹⁵⁾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지침』에 의한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관련 포함
 - 일반고 및 특수학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 개별화교육지원팀과 통합·운영 가능하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 내용 협의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과 안전이 강화된 현장실습 운영 철저

단계	내용
현장실습 실시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자기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에서도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 실습기관에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이해교육, 장애인차별금지,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폭력(성폭력 등) 예방교육, 개인정보교육 강화 • 교원 및 현장실습 지원인력에 대한 연수 기회 확대,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역량 및 책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연수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학생노동인권보호 관련 교육자료 및 콘텐츠 활용
현장실습 실시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의 현장실습 지도 강화 • 관계기관과 연계한 직무지도원 배치를 확대하여 인권침해 사안 사전 예방 • 관계기관과 협업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강화
현장실습 실시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보고회, 평가회 등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인권보호 체계 구축 • 학생만족도, 권익침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시 인권보호체계 확립

15) 특성하고, 마이스터고, 산업정보·문화예술정보학교

마.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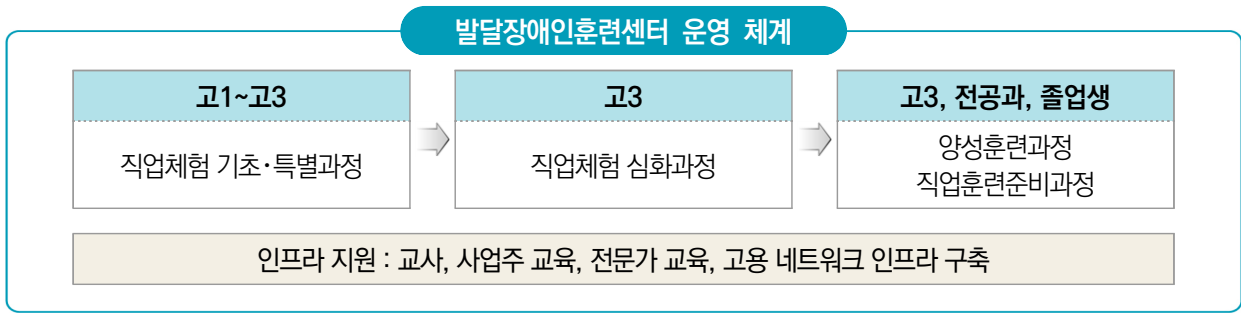
- 인근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지원으로 장애학생 직업교육 지역 거점학교로서의 역할 수행
 - 실습 중심의 진로·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 지역사회 사업체 및 관계기관과 연계한 직업교육 실시
- 지역사회 관계기관¹⁶⁾과 연계하여 교육·복지·노동 협업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및 활성화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연번	관할청	학교명	프로그램 및 담당 지역	지정 연도
1	서부	상암고	제과제빵, 바리스타, 이미지메이킹, 가죽공예 등	2010
			서부, 남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2	중부	경복고	대인서비스, 바리스타, 제과제빵, 디지털과정, 가죽공예, 연극 및 뮤지컬 등	2011
			중부, 동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3	강동 송파	문현고	제과제빵, 쇼콜라띠에, 데이터라벨링, 대인관계 역량강화, 힐마스터 자격증 과정 등	2013
			강동송파, 강남서초,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4	북부	서울 문화고	바리스타, 이미지메이킹, 생활원예, 목공예, 세차, 미디어(디지털) 교육 등	2013
			동부, 성북강북,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5	강남 서초	경기고	이미지메이킹, 컴퓨터 자격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디자인 교육, 바리스타 등	2014
			강남서초, 동작관악,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6	남부	관악고	바리스타, 목공기능사, 사진교실, 제과제빵, 셀프 메이크업, 이미지메이킹, 뮤지컬댄스, 힐마스터 자격증 과정 등	2017
			남부, 강서양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바. 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효율적 운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하여 설립·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전용 진로·직업훈련 전문기관(2개소)
 -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02-2230-0600)
 - 서울남부발달장애인훈련센터(영등포구 선유동 소재, 02-6252-3917)
-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재학생 및 전공과 발달장애학생의 개별요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직업체험과 직업 훈련 실시
- 발달장애학생에게 적합한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모델 제시 및 기업이 참여한 실제적 직업체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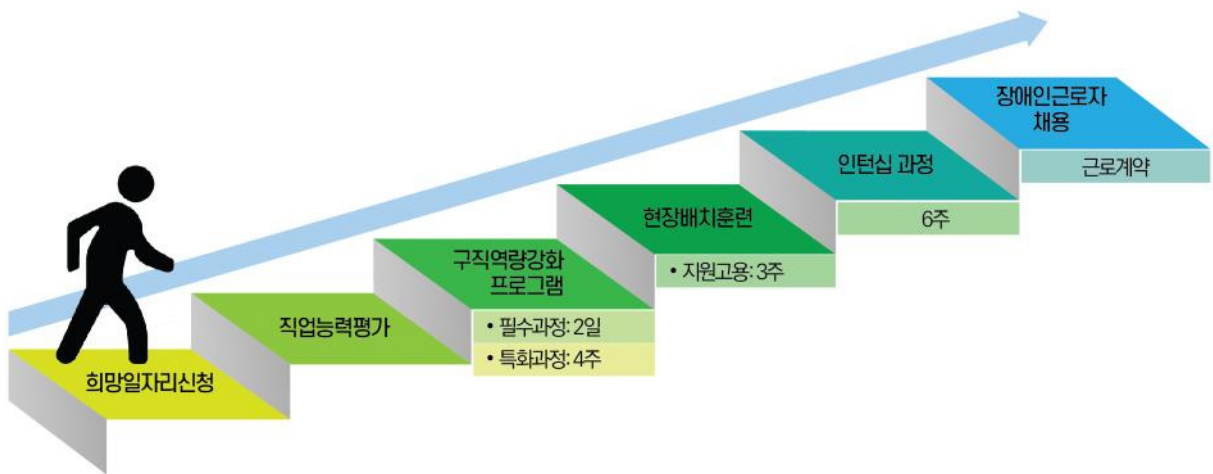
16) **지역사회 관계기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지사, 서울동부지사, 서울북부지사),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 운영 프로그램
 -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직업체험 기초·심화·특별과정, 일배움 프로그램, 양성훈련과정)
 - 직업능력 평가 및 맞춤형 진로·직업 교육 컨설팅
 - 지역사회 사업체·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장애학생 직업훈련과정
 - 장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 진로·직업교육 관련 연수 및 인프라 교육(대상: 교사, 사업주, 관련전문가 등)

사.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 운영 내실화

- 특수학교(급) 고3·전공과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기타 장애학생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 교무업무보조, 행정업무보조, 카페업무보조, 시설관리업무보조, 사서업무보조, 급식업무보조 등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기관 내 장애인 고용 창출
- 추진절차
 - 고3·전공과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교육과 고용 연계를 체계적으로 촉진하는 커리어 점프 관점의 고용 전환 프로그램



- 장애인일자리 참여 업무담당자에 대한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교육 실시 및 현장실습 추진 시 일반교직원의 역할 확대
- 현장배치훈련 및 인턴십 과정 참여 시 직무지도원 배치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직무지도 강화

아.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지원 사업 운영

-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
 - 대상: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3학년 재학 특수교육대상학생
 - 내용: 대학생활 체험* 기회 제공으로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 촉진 및 대학진학 후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 지원
- * 예비 장애대학생 대상 전공·교양 수업 체험, 진학 정보제공 및 컨설팅, 부대시설 이용 등으로 대학 적응 여건 조성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유형 예시

- 통합형: 체험형과 입시형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하되, 특정 시간 분반하여 운영
 - 입시형: 대학 입학 예정 학생 대상 입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 체험형: 대학 생활 및 전공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 ※ 대학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

- 장애인 특별전형 등 대입 관련 정보와 장애대학생 지원 정책, 대학교 지원 정보 등 통합 제공
-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 장애학생 직업실기 자격취득 과정 운영

- 장애학생의 진로탐색 기회 확대 및 적성 개발을 통해 직업실기 교육 활성화 지원 필요
 - 대상: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재학 특수교육대상학생
 - ※ 진로직업교육과 주관 「서울 드림 성장지원 바우처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내용: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자격취득 과정 프로그램 운영비 및 자격취득 비용 지원
 - ※ 1인 20만원 이내, 학교 당 최대 150만원 이내(특수학교의 경우 300만원 이내 지원)
 -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자격증 취득과정 우선 지원
 - 지원영역: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관련 자격 중 바리스타, 컴퓨터 관련 자격증, 제과·제빵기능사, 조리기능사, 사무행정정보조 및 헬마스터 자격(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등

차. 특수교육 진로·진학상담지원단 운영 신규

- 진로·진학지도 전문성이 뛰어난 교원 인력풀 구성 및 현장 지원을 위한 자료개발·보급 등 통합지원 필요
 - 대상: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담당교사
 - 내용: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진학상담 및 컨설팅 지원, 2026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대학 입학 진학 코칭자료 개정·보급
- 특수교육 진로·진학상담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및 진로·진학 상담 사례 나눔 운영
- 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대학 입학 설명회 및 대학 입학 진학 코칭자료 활용 방안 연수 실시

교육청 및 학교 시행 사항

교육청

-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자 진로 현황 파악(2025. 4월)
-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서울 예선 실시 (2025. 6월)
- 특수학교 학교기업·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성과 관리 및 결과 제출(2025. 12월)
- 개별화교육계획에 학생의 진학 및 성인생활 준비를 위한 개별화 진로 및 직업교육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권장
- 단위학교 현장실습 운영 점검 실시(2025. 10월 ~ 12월)

학교

- 현장실습 운영 점검 결과 제출(2025. 12월)
- 장애학생 일자리 참여 현황 제출(2026. 2월)
-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시 실습지도 및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한 추진 방안 마련
-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활용을 통한 장애학생 진로·직업 이력관리

도움자료

- 「(초등학교) 장애학생 교과연계 전환역량 향상 프로그램」(국립특수교육원, 2022)
- 「(중학교) 장애학생 교과연계 전환역량 향상 프로그램」(국립특수교육원, 2021)
- 「(고등학교) 장애학생 교과연계 전환역량 향상 프로그램」(국립특수교육원, 2020)
- 자료답재: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 - 진로 고등 - 진로교육 - 수업지원·교수학습자료
- 「전공과 운영 도움자료」(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 「2022-2023 특수교육 진로코칭 도움자료」(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 「발달장애인용 직업흥미검사」(국립특수교육원, 2019)
-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사례집」(국립특수교육원, 2019)
- 「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서울특별시교육청, 2023)
-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원 교육자료」(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자아이해 활동 자료집」(서울특별시교육청, 2023)
- 장애학생 교과연계 전환역량 향상 프로그램 지원 체계 나이스-팀(NISE_TEEMH)(국립특수교육원, 2023)



전환역량 향상 프로그램




발달장애인용 직업흥미검사

-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사전 교육 콘텐츠(국립특수교육원, 2023)
 - 자료탐재: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교육학습지원-진로교육-진로교육 콘텐츠
- 산업 직종별 현장실습 교육 콘텐츠(국립특수교육원, 2024)
 - 자료탐재: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교육학습지원-진로교육-진로교육 콘텐츠
- 「2025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대학 입학 진학 코칭자료」(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 「2025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 커리어 징검다리 코칭자료」(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2-2-2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질과 재능 발굴 및 여가생활 다양화 도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학교체육진흥법』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제14조(유아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체육활동 지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주요 내용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 문화예술기관 연계 장애학생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보급 확대
 - 「서울공예박물관」: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체험 운영 지원
 - 대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4·5·6학년 및 병원학교 입교 학생
 - 모집 공고(2월)의 신청(접수)절차에 따라 참가학교 선정 및 지원
 - 병원학교 입교 학생은 별도 신청에 따른 지원
 - 「서울시청 박물관과」: 박물관, 미술관 전시 관람 및 체험 사업 지원(예정)
 - 대상: 특수학교 및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 「미8군 부대 군악단」: 찾아가는 음악 공연 지원
 - 대상: 특수학교 학생
 - * (미술관·박물관) 맞춤형 도슨트 지원, (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 (영화관·공연장) 가치봄 영화 관람 지원 등
 - 특수학교 예술동아리 운영 등을 통한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
 - 특수교원 문화예술교육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연수 기회 확대
 - 체육 관련 진로 체험 기회 확대
 - 체육 인재 발굴 기회 확대 및 체육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참여 지원
 - ‘조금은 특별한 운동으로 하나되는 우리’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체육활동(텐덤사이클) 지원
 -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공·사립 중·고등학교
 - 내용: 정규교육과정 내 장애-비장애학생 간 어울림 활동을 통한 통합교육
- ※ 2025년 학교자율사업운영제 참조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에서 개발한 통합체육 수업자료 적극 활용
 -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이론편, 실습편) 및 동영상」(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2019)
 - ※ 총 5개 영역(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91편(초등3~4학년: 29편, 초등4~6학년: 23편, 중등: 39편)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 체육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급) 기본운영비 활용 권장
 - 대상: 특수학교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나.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활용
 -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장애학생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체력 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특수학교 19교 이내
 - 장애학생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체육동아리, 교기 육성, 스포츠클럽
 - 체육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대상 전문가 멘토링, 학습코칭 및 진로체험 등
- 스포츠강사에 대한 장애이해교육, 장애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장애공감문화 등 관련 직무연수 방법 안내 및 점검
 - ※ 스포츠 강사가 상기 직무연수를 이수할 경우 재채용 시 우대 권장

교육지원청 및 학교 시행 사항

교육지원청

- 지역사회 내 학생 참여 문화예술·체육활동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
 - ※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참여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에 적극 노력
- 관계기관의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사업 적극 활용
- 학교별 예술 동아리 조직 및 영화·연극 관람 등 문화 향유 기회 제공 확대

학교

- 학교는 매년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후 나이스(NEIS) PAPS/PAPS-D 측정 결과 입력 후 교육청 제출
- 학교교육계획에 운동 습관 형성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마련 권장
-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급)기본운영비 활용
- 스포츠강사에 대한 장애이해교육, 장애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장애공감문화 등 특수교육 관련 직무 연수 실시

도움자료

- 서울학생 예술활동 공유 및 나눔: 서울학생 더불어 예술쇼 페스티벌 운영 및 유튜브채널 운영

구분	서울학생 예술IN 플랫폼	예술락낙 	예술몽망 	창의예술 1센터	창의예술 2센터	창의예술 3센터
QR코드						

-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이론편, 실습편)」(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2019)
 - 자료 탑재: 생활체육정보센터 - 생활체육정보 - e-book - 통합체육 보급
-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 동영상」(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2019)
 - 자료 탑재: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정보센터, 유튜브채널
- 「손에 잡히는 PAPS-D 핸드북」 및 영상 활용
 - 자료 탑재: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에듀에이블
- 교육과정 내 어울림 통합체육활동을 위한 텐덤사이클 이해 도움 영상자료 안내
 - 텐덤사이클 이해(youtu.be/TbgeNVIYWfc)
 - 텐덤사이클 기초 연습(youtu.be/4DVftnJPd-4)
 - 텐덤사이클 실전 라이딩(youtu.be/mDyKZe7ILB0)



2-3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 확대

2-3-1 순회교육 운영 내실화

☞ 순회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정도와 교육 요구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 및 적절한 교육지원으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5조(순회교육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 주요 내용

가. 특수학교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
 - 가정, 복지시설 방문 순회교육 운영 학교: 11교*
 - * 서울경운, 서울나래, 서울도솔, 서울서진, 서울정문, 서울정민, 서울정애, 서울정진, 서울새롬, 연세대학교재활, 한국우진
- 순회교육대상학생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 작성·운영
-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함
 - ※ 학생의 장애특성 및 건강상태,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감축 운영
 - ※ 순회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적 요구와 학교의 여건 등을 반영하여 수업 지원
- 특수학교 순회교육 방법

방법	내용
방문교육	• 교사의 방문을 통한 1:1 교육
통신(원격)교육	• 이메일, 인터넷, 전화, 실시간 화상수업 등을 통해 과제를 부여하고 확인하는 교육
가정교육	• 사전 계획에 의해 가정에서 학생 혼자 혹은 가족과 함께하는 학습과제를 부여하는 교육
출석교육	• 재적 학교의 수업과 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교육
체험교육	• 사전 계획에 의해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하는 체험교육

-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방법, 가족지원 방법 등에 대한 순회교육 교사 연수

나. 통합교육지원 서울형 순회교육¹⁷⁾ 강화

- 대상: 유·초·중·고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순회교육이 필요한 학생 우선 지원
-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방법

구분	방법	내용
필수	순회교육팀 방문	• 학년 초 학교 환경 및 요구 확인
필수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지원	• 학기 초, 학기 말 개별화교육 수립
선택	교수·학습활동 지원	• 학생의 장애정도와 요구에 맞는 교수·학습활동 지원 - 통합학급 협력교수 - 통합학급 교사의 보편적 학습 설계 지원 - 1:1 개별학습(학교 내 개별공간) - 학급 내 또래 관계 사회성 교육 지원 - 개별화된 학습 및 활동자료(학습꾸러미) 지원
선택	장애이해교육	• 통합학급 장애이해교육 실시 •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연계 •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연계
선택	보호자 상담	• 보호자 대상 자녀 교육 상담
선택	통합교육 운영 컨설팅	• 통합교육 컨설팅 및 통합교육지원단 전문가 연계
선택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지역사회기관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연계

- 순회교사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 학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순회교육을 운영하고 평가 결과를 매 학기말 학생의 소속 학교와 학부모에게 제공

다. 병원학교 순회교육 확대

- 대상: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병원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건강장애학생
- 병원학교 현황: (서부) 연세암병원 병원학교, (남부) 고대구로병원 병원학교, (중부) 서울대어린이병원 병원학교, (북부) 한국원자력병원 병원학교, (강동송파) 서울아산병원 병원학교, (강남서초) 삼성서울병원 병원학교, 서울성모병원 병원학교, (성동광진) 국립정신건강센터병원 병원학교, 한양대학교병원 병원학교, (성북강북) 고대안암병원 병원학교
- 방법: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가 병원학교 방문 순회교육
- 병원학교의 수요 확인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병원학교 간 협의를 통해 순회교육 계획 수립·운영

17) 2022년 순회교육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의 환경과 특수성을 고려하고,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 방식을 다양화한 수요자 선택의 맞춤형 순회교육

교육지원청 및 학교 시행 사항

교육지원청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현황 조사(2025. 3월 말, 6월 말, 10월, 12월 초)
-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별한 사유를 지닌 경우에 한하여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통학 지원 등을 통해 가능한 한 학교에 출석하도록 유도

학교

- 순회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순회교육 실시 여부 결정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일반학교는 특수교육원센터 순회교육팀의 학교 방문 및 서울형 순회교육 운영 협조

2-3-2

장애 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강화

-  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건강장애 등 장애 유형·정도에 따른 개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
-  건강관리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개별화된 학습지원,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도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5조(순회교육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지원인력의 역할 등)
-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주요 내용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 중도중복장애 진단·평가 및 선정¹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2022. 6월)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유형 추가
-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 및 위생시설,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적인 지원 확대
 - 개인별 맞춤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노력
- 지체중복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지체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조기 발견, 학생·학부모 상담, 전문가 활용 현장 컨설팅 및 연수,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을 포함하되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 내실화

18) 「중도중복장애 등을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안내 자료」 참고(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3698(2022. 7. 1.))

-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¹⁹⁾
 -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초1~4, 중1, 고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운영 가능
 - 【초5~6, 중2~3, 고2~3,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운영 가능
 - 중도중복장애 지도 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 실시
 -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지원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교육청-의료기관-학교와의 연계 지원 체계 구축
 - 특수학교 건강관리지원 사업 운영
 - 특수학교 중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 선정
 - 학교-병원 간 계약 체결 후 정기적 방문을 통한 학생건강 상태 점검, 교직원 연수, 보호자 상담 및 교육, 컨설팅, 의료자문 등 지원
※ 학교와 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방안 마련
 -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지원 사업 운영
 - 지체장애 특수학교 중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 선정
 - 교육청-병원 간 협약 체결 후 정기적 방문(의사, 교육간호사) 및 상주(상주간호사)를 통한 의료적 상담 및 컨설팅, 교육, 연수, 의료적 처치 등 지원
 - 학교 내 학생건강관리지원 매뉴얼을 기반으로 표준화 건강관리지원 방안 적용 확대

나.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시·청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시·청각장애학생 현황 및 교육적 요구 파악
 -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교생활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 편의 지원

장애 유형	교육 편의 지원 유형	비고
시각장애	대체학습자료(점자, 데이지자료, 확대자료)제작 지원,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	중부, 강서양천
청각장애	수어·자막 서비스, 웨어타이핑(속기) 지원, 시 기반 실시간 문자 통역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소보로) 지원, 보조공학기기 등	동부, 남부

19) 『서울특별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내용 참고

-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 의사소통 평가, 학습매체 평가, 보조공학 평가, 보행 평가, 맞춤형 컨설팅 및 상담 등
- 시·청각장애학생의 학부모를 위한 상담 및 다양한 연수* 지원
 - * 점자 및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이해와 활용, 자녀 양육관련 자료 제공, 학생 진로·직업지도 상담 등

다. 건강장애학생 선정 및 교육지원 제공

- 대상: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건강장애학생
- 목적: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 방법: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꿀맛무지개교실)을 통한 교육 제공
 - 건강장애학생 선정: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 학생의 교육적·의료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선정 후 상급학교 진학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재심사)
 - 건강장애학생 선정·취소 시 학부모 동의 및 의사 진단서 등 확인

- 건강장애학생 선정 절차를 거쳐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꿀맛무지개교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교육(지원)청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 입교 가능
- 건강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철저
- 소속학교 출석과 병원학교, 원격수업(꿀맛무지개교실) 병행 가능
 - 단, 꿀맛무지개교실 입교한 동안은 위탁학생출결관리에서 출석 처리 필요
- 병원학교 운영 지원
 - 건강장애학생의 원인별 유형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병원학교 운영
 -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보장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지원
 - 병원학교 설치·운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전국 병원학교 누리집(hospital.s4u.kr) 활용한 홍보 및 입학 안내
 - 병원학교 현황(2025. 1월 기준)

순	교육지원청	병원학교명	연락처
1	서부	연세암병원 병원학교	02-2228-4733
2	남부	고려대학교구로병원 병원학교	02-2626-1326
3	북부	한국원자력병원 병원학교	02-970-2893
4	중부	서울대학교병원 병원학교	02-2072-3543
5	강동송파	서울아산병원 병원학교	02-3010-6652
6	강남서초	삼성서울병원 병원학교	02-2148-9828
7	강남서초	서울성모병원 병원학교	02-2258-5312
8	성동광진	국립정신건강센터 병원학교	02-2204-0255
9	성동광진	한양대학교병원 병원학교	02-2290-8737
10	성북강북	고려대학교안암병원 병원학교	02-920-5080



꿀맛무지개교실

- 원격수업(꿀맛무지개교실) 지원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꿀맛무지개교실(원격수업) 입교 후 수강
 - ※ 꿀맛무지개교실 누리집(health.kkulmat.com)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꿀맛무지개교실 입교신청서 제출 안내」 공문 참조
- 건강장애학생 담당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병원학교 담당자 및 보호자 교육 강화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학적, 출결, 성적 등에 관한 소속 학교 통합학급 교사 연수 시행(연 1회 이상)
 - ※ 병원학교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 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사항 반드시 확인
- 건강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 건강장애학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기관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기관 중심의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 복귀 후 적응력 신장 및 학업 격차 최소화 등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 학교 복귀 지원²⁰⁾
 -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시 건강장애학생의 소속 학교 교원 및 또래를 포함하여 운영*
 - *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학교 출석 체험 프로그램 등

교육지원청 및 학교 시행 사항

교육지원청

- 지체장애 특수학교 소재지 근처 지역사회 관계기관(의료기관, 대학, 보조공학지원센터 등)과 연계망 구축을 통한 학생건강관리지원
- 교육지원청별 업무협약 관계에 있는 병원학교를 대상으로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 장학 및 학적 관리 정보 제공 등 안정적 병원학교 운영 지원
- 국립특수교육원의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 연수과정에 일반학교 및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의 담당교사 참여 지원
- 학교급별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위한 장애 특성 이해 연수 지원

학교

- 『서울특별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수준(단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의 교사(담임, 특수, 보건)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학생 이해 및 지원에 대한 연수·교육 강화
 - ※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복귀를 위한 소속 학급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은 해당 학생 이용 병원학교로 협조 요청 가능

20) 「담임교사를 위한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가이드북」(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1) 활용

-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보호자 등에게 제공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8 출결상황 관리) 사항을 반드시 확인

1. (학적)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둔다.

2. (출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소속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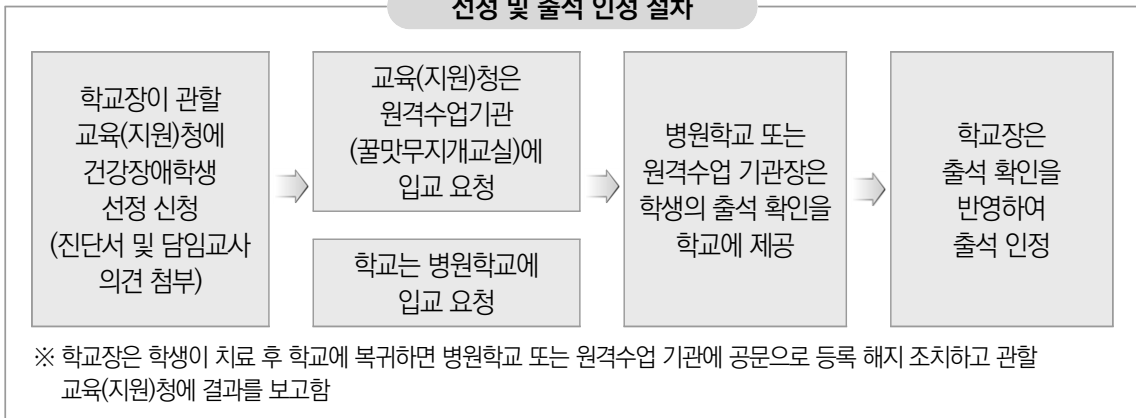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기관의 장이 발행한 출석확인서에 따름

※ 초등학교는 1일 1과목 원격수업* 수강 시, 중·고등학교는 1일 2과목 원격수업 수강 시 출석 인정

* 원격수업: 실시간 또는 녹화수업

※ 건강장애학생 이외 기타 영역의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인해 유급 위기가 예상될 경우 병원학교나 원격수업 이수를 통해 출석 인정 가능

선정 및 출석 인정 절차



3. (평가)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처리는 소속학교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는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요보호학생의 출결상황 관리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치료 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원격수업을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원격수업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

1. 건강장애학생 지원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결석 또는 유급 예방을 위하여 순회교육, 병원학교,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출석일수를 확보하여 상급 학교·학년에 진학하도록 지원

2.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지원 및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학교 출석, 병원학교, 원격수업 등을 이용한 출석일수 확보 계획을 포함하고, 학생 연령과 학업수준에 따라 학업중심 교육과정과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의 균형 유지
- 통합학급 담임 교사, 특수교사, 학부모 도우미, 교사 자원봉사단, 예비교사 등이 일대일 상담 및 지도 등 지속해서 관리하여 학년별·과목별 진도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반학생 봉사점수제 활용, 캠프,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으로 치료효과 증진 및 학교 생활 적응 도모

3. 병원학교 교육과정 운영

- 특수교사 외의 교사 자원봉사단(퇴직 교원 포함), 예비교사 도우미 등을 통해 병원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방문교육·사이버가정학습·원격수업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학사 관리: 병원학교의 수업 참여를 출석으로 인정하여 소속 학교에 출석확인서 송부

건강장애학생 등의 학점제형 학사제도 운영 안내

1. 대상: 건강장애, 병원학급 등 위탁교육 또는 순회교육 대상 학생
2. 학점이수 인정 기준
 - 출석률(과목출석률2/3 이상): 별도적용 가능
 - 학업성취율(학업성취율 40% 이상): 별도적용 가능, 미적용 가능
3.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 제외

2-4

특수교육대상학생 안전 강화



특수학교(급)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²¹⁾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학생 안전교육),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
- 교육부 『학생보호 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2조 및 제10조

주요 내용

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안전교육 편성·운영

-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학생 안전교육 편성
 -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 실시 권장

〈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 시간 및 횟수 〉

(단위 :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 안전 교육	교통 안전 교육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 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 안전 교육	직업 안전 교육	응급 처치 교육	합계
교육 시간	유치원	13	10	8	10	6	2	2	51
	초등학교	12	11	8	10	6	2	2	51
	중학교	10	10	10	10	6	3	2	51
	고등학교	10	10	10	10	6	3	2	51

- 특수학교(급)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계획 수립 시 안전 계획 포함
 - 단위학교별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체험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안전한 체험활동 지원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체계 구축
 - 사고 발생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체 방안 수립

21) 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설 2024.12.20.〉

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 소방서, 경찰서 등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재난 상황별(교통사고·화재·지진 등) 안전 대피 훈련 실시
 - 해당 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훈련 실시
- 안전 대피 훈련으로 파악한 재난상황별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학생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학교 단위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 ※ 장애학생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교육부·경남특수교육원), 안전한 학교·행복한 학생을 위한 학생 안전 매뉴얼(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정보센터(교육부), 누리집의 참고자료 활용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운영

- 특수학교의 학교교육계획에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통학로 학생 보호 인력 배치, 자기 보호 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 계획 등 포함
- 특수학교 통학버스 안전관리²²⁾(위치알림 서비스, 안전 확인 장치 설치, 통학버스 운전자, 운전자 및 통학 지원인력 안전교육 등)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통학 환경 개선(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지역사회기관과 협력

라.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에 따라 안전 점검 연 2회 이상 실시
 -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 미달 학교는 시설 연간정비계획 수립·시행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안전 사고 예방·시설 점검 계획 수립
- 학교별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시행
 -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 예방·관리 철저
- 학교보안관제 운영 정착을 통한 학교 출입자 관리로 안심한 배움터 실현
 - 대상: 국·공·사립 특수학교 32개교
 - 방법: 선발 및 운영(학교장), 예산지원(서울특별시)

마.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노력 지속

- 학교보건 등 관련부서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공단지역 악취·소음·먼지 등 피해, 송전탑 설치 지역 등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

22)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 시 통학차량 신고(「도로교통법」 제52조), 동승보호자 탑승 등 안전조치(동법 제53조), 운전자·운전자·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 이수(동법 제53조의3)

교육지원청 및 학교 시행 사항

학교

- 특수학교에서는 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 설치 및 운전자의 하차 확인 의무 이행 독려
- 특수교육대상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 소방서 간 협의체 운영 지원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년별 안전교육(교육시간,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등) 및 교직원 등에 대한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 결과 보고
-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참여에 제한이 없도록 지원인력 배치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참여 방안 및 안전대책을 기본계획에 포함
-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병 발생 시 보고 철저

도움자료

- 「장애학생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교육부·경상남도특수교육원, 2016)
- 「안전! 다함께 지켜야 할 약속(특수학교(급) 안전사고 유형별 대응방안)」(경기도교육청, 2017)
-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생을 위한 학생 안전 매뉴얼」(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범교과 학습 주제 적용 안내자료」(교육부, 2024)
- 「2025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안내」(서울특별시교육청, 2025)
- 「2025 1일형 현장체험학습 운영절차 안내」(서울특별시교육청, 2025)
- 학교안전정보센터(교육부) 누리집(schoolsafe.kr)
- 국민재난안전포털(행정안전부) 누리집(safekorea.go.kr)
- 서울안전누리(서울시교육청) 누리집(safecity.seoul.go.kr)
- 교통안전 교육센터(한국도로교통공단) 누리집(trafficedu.koroad.or.kr)
-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 안전교육자료
 - 자료 탑재: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정보 - 서울교육자료 - 교육자료 - 안전교육
- 한국어린이안전재단(행정안전부) 누리집(childsafe.or.kr)

※ 체험형 안전교육 운영 기관

순	체험관명	세부운영내용	
1	광나루 안전체험관	교육내용	화재나 지진, 태풍 등 각종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일반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재난 체험관
		운영주체	서울소방재난본부
		예약신청	safe119.seoul.go.kr/gwangnaru
		연락처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38 (☎ 02-2049-4061)
2	보라매 안전체험관	교육내용	지진, 태풍, 화재, 교통사고 4가지 재난체험장과 심폐소생술과 같은 기본 응급처치와 소방 시설의 작동원리 및 조작법을 배울 수 있는 전문체험장으로 구성된 종합안전체험관
		운영주체	서울소방재난본부
		예약신청	safe119.seoul.go.kr/boramea/
		연락처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02-2027-4100)
3	비상대비 체험관	교육내용	3D 영상 관람, 심폐소생술(주말), 방독면체험, 소화기체험 등
		운영주체	서울시(송파구) 지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예약신청	www.비상대비체험관.kr
		연락처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3층 (☎ 02-794-3225)
4	송파 안전체험 교육관	교육내용	어린이부터 초·중·고등학교생, 성인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며 스스로 안전을 배우는 어린이종합안전교육장
		운영주체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예약신청	www.isafeschool.com
		연락처	송파구 성내천로 35길 53 (☎ 02-406-5868)
5	서울시 민방위 교육장	교육내용	서울시 전 자치구(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 우선) 소재 학교 학생(유초중고) 대상이며 화재, 풍수해, 지진 등 체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3~12월 운영
		시설현황	강당(250명, 8개 실습장(응급처치, 화재예방, 풍수해, 지진, 교통))
		예약신청	전화상담 (☎ 02-975-5315)
		연락처	성북구 화랑로 376 태릉민방위교육장 (☎ 02-975-5315)
6	키즈 오토파크	교육내용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작동해보는 교통안전체험관
		운영주체	한국생활안전연합에서 위탁 운영
		예약신청	www.kidsautopark.org
		연락처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내 키즈오토파크(☎ 02-455-7119)
7	소방안전 체험교실	교육내용	119신고하기, 소화기 시뮬레이션, 연기피난, 지진체험 등
		운영주체	소방재난본부 소방서 22곳
		예약신청	소방훈련·교육 종합지원시스템(fire.seoul.go.kr)
		장소	서울 25개 소방서에서 교육 실시
8	양천구 생활안전 체험교육관	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1시간), 생활안전 체험 및 이수증 발급 등
		운영주체	양천구청
		예약신청	www.yangcheon.go.kr > 생활안전체험교육관
		연락처	양천구 목동서로 363(☎ 02-2620-4397~9)
9	디지털 시민안전 체험관	교육내용	가상현실(VR)안전체험, 심폐소생술, 전동차 운전, 소화기체험, 지하철 안전장비 체험 등
		운영주체	서울교통공사
		예약신청	www.seoulmetro.co.kr > 시민참여 > 신청센터 > 시민안전체험·홍보관 체험
		연락처	7호선 반포역 B1 디지털 시민안전체험관(☎ 02-6311-7058)

모두를 위한 협력적 통합교육

3-1

협력 기반 교육과정 중심 통합교육



3-1-1

함께 다지는 통합교육

-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이 함께 통합교육 정책 추진
- 미래 지향적 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으로 공존의 혁신 교육 실현



근거

- 『초·중등 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주요 내용

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이 함께 추진하는 통합교육 정책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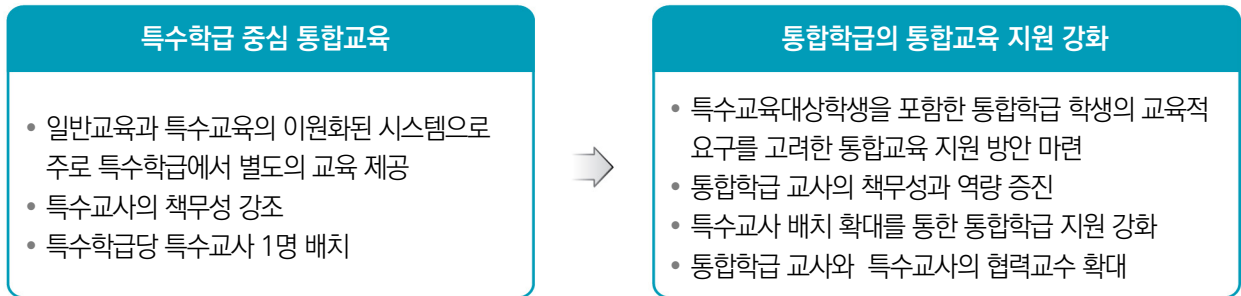
- 통합교육에 대한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책무성 공유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유도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우수사례 정기적 홍보(카드뉴스, 뉴스레터 등)
- 정책배리어프리(Barrier Free)²³⁾ 실행을 위한 협의체 운영
 - 교육(지원)청 부서 간 정기적 협의체 운영으로 특수(통합)교육 관련 현안 공유,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 발굴, ‘사업 시행 전 검토항목’ 성실한 내용 검토 실시 권장
 - 학교 내 통합교육 협의체 운영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정책배리어프리 캠페인 기획·실행
 - 정책배리어프리 관련 홍보 영상 제작 및 배포
 - 교육청 및 직속기관 대상 ‘선 넘는 정책 실천 사례’ 공모 및 우수 사례 홍보
 - 정책배리어프리 실행을 위한 교육청 및 학교 현장의 매뉴얼 제작 및 보급

23) 정책배리어프리(Barrier Free): 정책 수립 시, 계획 단계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정책적 차별을 예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존교육의 실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의미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통합교육계획 수립
 - 단위학교 통합교육계획 수립 및 학교교육과정에 반영
 -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 운영, 학습보조기 지원, 교원 연수 등의 내용 포함
-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 확대
 - 지역사회 관계기관, 대학 등과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협조 체제 구성
 - 대학생 교육봉사활동 ‘동행’ 등과 연계하여 특수학급 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 강화

나. 통합학급 지원 확대

- 통합학급 통합교육 지원 강화



- 다양한 학생들의 의미있는 배움이 살아나는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 학교급별 교육과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맞춤형 학습 지원
 - 학부모가 공감하는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지원 방안 마련
 -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조정²⁴⁾
-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보편적 학습설계²⁵⁾ 역량 강화
 - 보편적 학습설계를 포함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장학자료 개발
 - 보편적 학습설계를 적용한 수업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 더공감교실 운영을 통한 보편적 학습설계 적용 사례 발굴·나눔

다.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 초·중·고등학생과 교원의 장애인식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학교장애인식지수’ 및 연계프로그램 보급
 - 내실있는 장애이해교육 정책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해 통합교육 실시학교 적용 및 학교 과정별 장애인식 수준 추이 분석
 - ※ ‘학교장애인식지수’ 적용 및 활용 방안은 교육부 별도 안내 예정


24) 통합학급 학생 수 감축 조정 : 학교의 장은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학급의 학생 수를 1~3명 감축 조정(교육부 고시 제2023-34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2023.9.1.시행))

25) 보편적 학습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DL) : 학습자들에게 존재하는 개인 간 다양성을 인정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모든 개별 학습자에게 적합한 학습목표, 학습방법, 학습자료, 평가 등을 다양하게 설계하는 것을 의미

‘학교장애인식지수’ 기본 구성 내용

구분	내용		
대상	• 일반학교 초등학생(3~6학년)용, 중·고등학생용, 교사용 각 5종		
구성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교사용
	• (지표) 관점, 지식, 정서, 실천 • (문항) 6가지 상황 34문항	• (지표) 관점, 지식, 정서, 실천 • (문항) 7가지 상황 41문항	• (지표) 관점, 지식, 실천 • (문항) 6가지 상황 35문항
활용	1 장애인식수준 진단	2 지표별 수준 확인	3 결과 활용
	• 온라인 검사 시스템* 활용 대상자별 인식지수 진단 *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 탑재('25년(예정))	• (상) ACES • (중) MIDD • (하) RASE	• 지표별 인식 수준 결과에 따라 연계프로그램 적용 예) '실천' 지수 낮을 경우, '장애·비장애 상호작용 프로그램 적용' 등

※ 연계 프로그램: 학교장애인식지수 지표별·학교과정별 40개 쇼츠 콘텐츠

 **교육지원청 및 학교 시행 사항**

 **교육지원청**

- 정책배리어프리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청 부서 간 정기적 협의체 운영 및 사업 시행 전 검토 점검
- 지원장학 시 통합교육 주요 정책 안내
- 통합교육 실시학교(초·중·고) 대상 ‘학교장애인식지수’ 적용 안내 및 참여 독려(별도 안내 예정)

 **학교**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학교는 통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통합학급 운영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노력
- 특수교육대상유아 일반학급의 정원 내 우선 배치로 통합교육 여건 개선

3-1-2 함께 성장하는 통합교육

- ☑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체계 강화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 ☑ 통합교육 연수 및 자료 지원 확대로 교원의 통합교육 실행역량 강화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 향상), 제21조(통합교육)

📁 주요 내용

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교수 활성화

-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보편적 학습설계 적용 협력교수 기반의 더공감교실* 운영 확대



- 더공감교실 운영 형태의 다양화: 학교단위, 학급단위²⁶⁾ 더공감교실 운영
- 지속 가능한 일반·특수교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단위 더공감교실에 특수교사 추가 배치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의미 있는 수업 참여 지원

26) 학급단위 더공감교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팀을 구성하여 한·두개의 통합학급에서 소규모로 협력교수를 실행 (운영비 지원, 특수교사 추가배치 없음)

- 수업 외에도 학급 운영, 생활지도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일반·특수교사의 협력교수 실행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공동체의 상호 협력적인 학교문화 조성

*** 2025 더공감교실 현황**

- 연구학교: 서울마곡유, 서울청림유, 서울대청초, 서울이문초, 서울이태원초, 서울서래초, 수송중, 위례솔중(8교)
- 운영학교: 서울경동유, 서울새솔유, 서울서빙고초병유, 서울중흥초병유, 서울위례별유, 서울향동유, 서울봉천초, 서울영동초, 서울봉래초, 천일중, 공릉중, 수서중, 봉화중, 장안중(14교)

*** 2025 학급 단위 더공감교실 선정·운영: 초·중·고 20교 선정 예정('25. 2월)**

○ SI와 함께하는 「사회정서학습교실」 선정·운영

- 대상: 초등학교 20교(일반 및 특수교사가 함께 학교 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신청)
-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을 통한 교실 속 통합교육 실현 방안 모색
- SI·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정서역량 신장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간 협의 체제 구축

-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역할 나눔, 협력 수업 계획 수립
- 「십분의 기적*」 프로젝트 운영으로 상시적 협의 문화 조성

*** 십분(十分)의 기적이란?**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생활 전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십분 협력하여 만들어 가는 수업 혁신 문화
- ※ “십분”은 시간(10분) 뿐만 아니라 교사 협력과 소통, 학생 참여에 대한 충분한 노력(十分)을 함께 의미함

○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특수교육대상학생 정보공유, 협력교수 등 협업 강화
- 학교급별 교육과정 특성을 반영한 협력교수 실행 사례 공유
- 협력교수 우수사례 발굴·확산

나. 협력적 통합교육 실천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 일반학교 관리자[교(원)장·교(원)감] 협력적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 연수

- 통합교육 및 장애이해, 통합학교 운영 리더십 함양 내용을 포함한 연수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1명 이상 배치된 일반학교(유치원) 교(원)장·교(원)감 특수(통합)교육 관련 연수 3시간 이상 이수
- ※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 ※ 2025년부터 통합교육 실시 학교 교(원)감의 연수 이수 실적 지표 시범 적용 예정
- ※ 교육(지원)청, 국립특수교육원 연수정보시스템의 관리자 대상 연수 과정 적극 참여

- 통합학급 교사 통합교육 실행역량 강화 연수
 - 통합교육, 사회정서학습, AI·에듀테크 활용 교수·학습 내용을 포함한 직무연수 운영
 - 특수(통합)교육 관련 직무연수 15시간 이수 권장
 - ※ 국립특수교육원 연수정보시스템의 교사 대상 연수 과정 참여 적극 권장
 - 교육지원청별 신규교사 추수 연수 시 특수(통합)교육 강좌 개설 권장
- 일반·특수교사 협력 증진 활성화를 위한 연수 운영
 - 중학교·고등학교 일반·특수교사 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 역량 강화
-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교육 실행역량 강화 연수

연수명(가칭)	대상	인원	주요내용	시기
일반학교 관리자 통합교육 연수 I	특수교육대상학생이 1명 이상 배치된 일반학교 유·초·중·고 교(원)장	(대면)250 (비대면) 2,000	통합교육 운영내용 통합교육 사례나눔	2025. 5월
일반학교 관리자 통합교육 연수 II	특수교육대상학생이 1명 이상 배치된 일반학교 유·초·중·고 교(원)감	(대면)250 (비대면) 2,500	통합교육 운영내용 통합교육 사례나눔	2025. 9월
AI와 함께하는 「사회정서학습교실」 운영 교원 전문성 향상 연수	AI와 함께하는 「사회정서학습교실」 운영교사	40	통합교육, 사회정서학습, AI·에듀테크 활용 학습 등	2025. 4~5월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교육	중·고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2인1조)	50	통합교육 지원 관련 소통역량 함양	2025. 8월
디지털 기반 통합교육 교원 연수	초·중·고 특수학급 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기본)100 (심화)30	AI와 보편적 학습설계 AI 활용 수업 사례 등	2025. 5월 2025. 6월

- 개별화교육계획 연계를 통한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
 -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통합학급 교사의 역할 명시
 - 통합학급 수업 운영 사례 나눔 및 컨설팅
- 예비교사 대상 교육실습에 통합학급 운영 등 통합교육 관련 실습 포함 권장
 -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시 보편적학습설계,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고려한 유의점 설계 등 실습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실행자료 개발·보급
 - 관리자 통합교육 안내서, 통합학급 운영 도움자료, 통합교육 업무 지원자료 등 개발 및 보급
 - 학교급별 통합교육 지원자료 활용 연수 실시
 - ※ 통합학급 유아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 활동 자료 개발 및 보급
 - ※ 2019 개정 누리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연수 시 보편적 교수학습 설계 기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운영
 -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협력교수 도움자료 개발 및 보급(영상, PDF)

다. 맞춤형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일반·특수교육 교원 협력체제 구축 및 공동 연구·실천을 위한 통합교육공동체 운영
 - 프로슈머 연수 기획으로 공동체 교원들이 희망하는 연수 운영
 - 독서·토론·체험을 통한 경험 공유 및 소통 문화 조성
 - 협력교수, 보편적학습설계 운영 방안 연구 등 자율적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기관 운영: 11기관
 -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내실화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운영
 - 지역별 특수학급 설치·미설치 유치원 간 네트워크 구축
 - 유치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놀이 활동 지원
 -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대상 통합교육 지원,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특수(통합)교육 관련 연수 등 역할 수행(연수 운영 시 어린이집 특수교육 담당 보육교직원 포함)
- 현장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11단
 - 통합학급 교사·특수교사, 교수, 보호자, 행동중재전문가 등 영역별 전문가로 위원 구성
 - 특수교사 네트워크 구축, 신규 및 저경력교사 대상 멘토링제 운영
 - 교육지원청별 특수(통합)교육 관련 연수, 영역별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교육과정, 수업, 학급운영, 생활지도 등 학교급별·영역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통합교육지원단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워크숍 운영 및 사례 나눔 활성화
 - 교육과정지원단, 개별학생 행동중재지원단 등과 연계하여 운영



교육지원청 및 학교 시행 사항

교육지원청

- 더공감교실 연구학교 운영 지도
- 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교사 연수 시 '십분의 기적' 홍보
- 교육지원청별 관리자 특수(통합)교육 연수 3시간 이상 이수 실적 보고(2026. 1~2월)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학교(유치원)의 교(원)장·교(원)감 연수 이수
 - 특수(통합)교육 관련 주제의 연수 및 교육(지원)청 운영 연수 이수 실적 인정
 - 법정 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등)은 연수 실적에 미포함
- 통합학급 교사 대상 특수(통합)교육 연수 15시간 이상 이수 적극 안내
-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의 신규 및 저경력 교사에 대한 멘토링제 운영 강화
- 교육지원청별 내실 있는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및 운영

 학교

-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 협력을 위한 체제 마련 노력
- 시와 함께하는 「사회정서학습교실」 운영 학교 참여 협조(초 20교)
- 국립특수교육원의 통합교육 관련 원격교육 연수 과정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 매월 업무관리시스템 통합게시판을 통해 학교에 안내
- 통합학급 교사 특수(통합)교육 관련 연수 이수 실적 보고(2025. 12월)
- 특수교육대상학생 1명 이상 배치된 일반학교(유치원) 교(원)장·교(원)감 특수(통합)교육 관련 연수 3시간 이상 이수 실적 보고(2026. 1~2월)
- 학교자율사업 또는 교내 자율적인 교원학습공동체 구성을 통한 통합교육공동체 운영
- 예비교사 교육실습 시 통합교육 관련 내용 포함

 도움자료

- 통합교육 지원자료

자료명	자료 탑재
「2020 더불어통합공동체 운영 사례집」(2020)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청안내 - 부서안내 - 특수교육과 - 부서업무방
「2020년~2021년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집」(서울시교육청, 2021)	
「같이의 가치로 함께하는 통합교육」(서울특별시교육청, 2025)	
「2022학년도 더공감교실 운영 사례집」(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2023학년도 더공감교실 운영 사례집(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편)」(서울특별시교육청, 2023)	
「2024학년도 더공감교실 운영 사례집(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편)」(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특수·일반교사 협력교수 도움자료」(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함께의 가치로 모두가 성장하는 협력교수」(서울특별시교육청, 2023)	
「곁에두고 바로쓰는 통합학급 길라잡이(유·초·중·고등학교편)」(서울특별시교육청, 2025)	
「한 권에 담은 통합교육 도움 자료」(서울특별시교육청, 2025)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 가이드북」(교육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7)	교육부 - 정책 - 초·중·고 교육
「학교교육력 제고(통합교육) 사례보고서」(2020~2021)	SSEM 서울교육포털 - 교육연구 - 교육력제고
「통합유치원 운영 모델」(국립특수교육원, 2018)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 - 수업지원자료 - 교수·학습자료
「유치원 통합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국립특수교육원, 2021)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놀이 지원 자료집(1~6권)」(국립특수교육원, 2021)	
「장애유아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집」(국립특수교육원, 2022)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국립특수교육원, 2020)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 - 학급운영지원자료-통합학급

3-2

장애공감문화 정착 및 지원체제 강화



3-2-1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정착

- 교육과정에 기반한 장애이해교육 운영 및 활성화
- 장애공감활동의 지속적인 운영 및 다양화를 통한 장애공감문화 정착



근거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803호, 2018. 1. 4. 제정)
- 교육감 공약사업: [1-1-5]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 및 맞춤형 지원



주요 내용

가. 교육과정 연계 장애이해교육 활성화

- 수업에서 다양성을 가치 기반으로 하는 장애이해교육 실시
 - 교육과정 연계 장애이해교육 운영 확대
 - 다양한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공감 자료 활용, [도움자료] 참고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자율시간 등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장애이해교육 실시
 - 범교과 학습주제(인권-장애인식개선교육)와 연계한 인권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 다양한 교과와 연계한 장애이해교육
- ※ 교과와 연계한 장애이해교육은 학생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 교육 실적으로 인정
(예: 도덕·국어: 인권·타당한 글쓰기, 음악: 합주, 미술: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전·협동화, 체육: 장애인스포츠 등)

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교육 강화

- 학교 구성원(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학기별 장애이해(인권)교육 수업시수 확보(권장)
- 학교급별 교육과정(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과 연계한 장애이해교육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
 - ※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해당
- 장애인의 날(4.20.) ‘특별기획방송’²⁷⁾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 실시
 - ※ 초·중·고등학교 특별기획방송 활용 수업 시 2차시 분량의 시간 확보 권장
- 교직원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대상 : 공무원(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학교장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 보건복지부 발간 『2025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준수
- 학부모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실시(확대)
 -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총회 및 연수, 학교 공개의 날 등에서 전문강사(인식개선 강사, 장애인 당사자, 장애 자녀를 둔 보호자, 교원 등), 우수콘텐츠, 카드뉴스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식개선 및 통합교육 이해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
 - ※ 통합교육 및 통합(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안내 및 홍보활동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으로 인정
-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통합교육 이해 포함) 홍보 콘텐츠(카드뉴스) 활용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www.able-edu.or.kr.) 교육 이수 실적 관리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계획 수립 내용 제출
 - 학생 대상 교육 연 1회 이상, 교직원 대상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실적 입력
 - ※ 부진기관은 언론 공표되므로 실적 관리 필요
 - ※ 병설유치원 및 분교는 소속학교에서 교육실적 통합하여 실적 입력

다. 장애공감문화 확산

- 장애 바로 알기 및 일상 속 장애공감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인식개선 지향
- 학생 주도 장애공감 프로젝트 운영학교 지원
 - 자치 및 학생 동아리 중심의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등 장애공감활동 지원
 - 초(5·6학년)·중·고등학교 자치 및 학생 동아리(총 30팀)
- 장애공감문화 실천 사례 공모전²⁸⁾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
 - 학생 대상 장애공감문화 실천사례 공모전
 - 교원 대상 교과 연계 장애이해교육 수업 실천 사례 공모전
 -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자료집 제작 및 보급

27) 교육부 안내: 유(유아용 3D 애니메이션), 초(대한민국 1교시), 중·고(장애이해교육 드라마)

28)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체 운영(‘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실천 사례 공모전’)

교육지원청 및 학교 시행 사항

교육지원청



- 장애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 콘텐츠 확산 노력
- 교육지원청별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장애공감문화 활성화를 위한 장애공감활동 관련 행사 안내 및 참여 독려

학교





- [교육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교육 시 장애인권교육 내용 포함
 - 학생 연 2회 이상, 교직원 연 1회 이상, 학부모 연 1회 이상
 - ※ 교육부 이수 실적 보고 내용(보건복지부 교육 이수 실적과 중복 인정)
- [보건복지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교육 이수 실적 입력
 - 실적관리 시스템(www.able-edu.or.kr.)에 입력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계획 수립 내용 및 교육 이수 실적 제출
 - ※ 병설유치원 및 분교는 소속학교에서 교육실적 통합하여 실적 입력
 - (법정의무교육) 학생 연 1회 이상, 교직원 연 1회 이상
 - ※ 보건복지부 점검에 따른 부진기관은 언론 공표되므로 실적 관리 필요
- 다양한 장애공감활동자료 활용, [도움자료] 참고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공감활동자료(www.eduable.net - 장애공감) 등

도움자료

- 교육과정 연계 장애이해교육 자료

자료명	QR코드
유치원용 「서로 다른 우리 함께 놀이해요」(서울특별시교육청, 2021)	특수교육 학습공유공간   <small>특수교육 학습공유공간</small>
초등학교용(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서로 다른 우리 함께 해요」(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 「서로 다른 우리 함께 해요」개정판(1·2학년군)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중고등학교용 「영화와 도서로 시작하는 장애공감 수업 레시피」(서울특별시교육청, 2021)	
2024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실천사례 공모전 우수 사례집(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참고자료



자료명	자료 탑재	QR코드
통합교육 및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카드뉴스 5종 (학생 대상 1종, 교사 대상 2종, 학부모 대상 2종)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교육청안내-부서안내-특수교육 과-부서업무방(179번)	
「2025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 공지사항 ※ 실적관리 시스템: www.able-edu.or.kr	
유치원용 장애이해 애니메이션 「친구가 되어요」 외 다수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 교육자료	
초등학교용 「달려라, 원발자전거」 외 다수		
중등용 「청소년들이 꼭 봐야하는 영상」 외 다수		
교직원용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길라잡이”」외 다수		
장애공감 교육자료 다수	국립특수교육원-에듀에이블-장애이해 교육영상	

●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프로그램

- 장애이해 동영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누리집·유튜브
-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방송 대한민국 1교시(KBS 라디오, 국립특수교육원 탑재)
- 장애이해드라마(KBS TV, 국립특수교육원 탑재)

3-2-2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  장애학생의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 성교육 내실화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13조(특수교육실태조사),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1조(통합교육)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보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계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주요 내용

가.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 구축·운영
 - 장애학생 온라인 인권보호 신고센터 운영
 -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보호 신고센터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 특수학교 내 신고함 등을 활용하여 인권침해 사안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학교 차원 점검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조사 실시(2025. 5월~10월 예정)

2025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개요

-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침해 관련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 인권침해 예방·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 지원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내용) 2024년 2학기부터 2025년 1학기 동안 학교생활 내 인권침해 경험 및 인식 등
 - ※ 조사표는 학교폭력, 학습권리, 학교생활(3개 영역)로 구성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초등학교 4학년~전공과) 및 보호자, 교원
- (시행) 17개 시·도 교육감 ※ 주관: 인천광역시교육청

-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 관련 실태 점검 협조

-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 신설·강화
 - 학생 및 교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권 감수성 교육 실시 규정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특별지원 사항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우수학생에 대한 ‘포상’ 조항 신설 권장
 -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학교(급) 규칙 만들기 및 생활수칙 실천 운동 등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을 통한 동아리 활동 지원 권장
 -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장애인권동아리 운영*
 - * 장애인권 UCC 제작 공모전 참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인권 관련 공모전 및 행사 참가 등

나. 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 구성: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8명 이상)
 - (필수위원) 초등교육지원과장,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특수학교(급) 교장(감) 또는 수석교사,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장애학생 보호자, 성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
 - (기타위원) 법률 전문가, 사회복지사, 청소년인권전문가, 의료전문가 등
-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 기능 수행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월 1회 이상 지역내 학교 방문 및 유선, 원격 등 다각적 지원(특수학교는 연 2회 이상)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피해학생 특별지원
 - ※ 관내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혹은 팀원)과 필수 동행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전월 현장지원 및 특별지원 결과 시스템에 제출(매월 5일까지)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 및 연수 지원*
 - * 비장애학생, 장애학생, 교원, 학부모 교육 시 인권지원단의 분야별 전문강사 활용(찾아가는 장애인권교육, 장애학생 인권보호 연수, 특수학급 성교육 교실, 인권 감수성 쑥쑥, 성·인권교육, 인형극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 등)
- 더봄학생²⁹⁾ 지원 강화
 - 건전한 또래 문화형성과 마음 건강 및 자기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 지역 관계기관 및 경찰서와 연계하여 수시 상담 및 순찰 강화
- 지역사회 관계기관³⁰⁾ 협의체 구성, 학기별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한 정보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폭력 전담 기구 사안 조사 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또는 특수교육전문가³¹⁾를 참여시켜 학생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 조력 가능
- 중대 사안 발생 시 교육청에 즉시 보고, 신속 조치 및 대응

29) **더봄학생**: 학교(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피해 경험이 있거나 다양한 외부적 환경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

30) **지역사회 관계기관**: 특수학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31) **특수교육전문가**: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

다. 장애인권교육 강화

- 장애인권교육 대상 자신의 권리 인식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몸짓상징³²⁾ 및 보완대체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활용
- 교육과정 연계 특수학교 학교폭력예방교육(언어폭력·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포함) 실시
 - ※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해당
- 장애인권교육 대상 학기별 1회 이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성폭력 또는 성추행 가해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회적 기술 교육 실시
 - 타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성폭력 및 성추행 대처방법 지도
- 교육지원청 장애인권지원단을 활용한 성교육 및 상담활동 지원 강화

교육지원청 및 학교 시행 사항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별 장애인권지원단 운영 계획 수립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안내 및 조사 진행 협조
- 2025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2025. 11월 말)
-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는 학교(성)폭력 사안 접수 시 장애인권 관련 사안인 경우 **장애인권지원단에 즉시 공유**
 - ※ 사안처리는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장애인권지원단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교육, (성)상담 등의 지원 제공
-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직원 대상 장애인학대 범죄 경력 조회 연 1회 이상 확인·점검

근거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을 제한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 2	특수교육기관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이나 종사자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 취업제한 등대상자 여부를 확인·점검함

32) 몸짓상징: 몸을 이용한 비구어 의사소통 방법(손짓, 눈짓, 몸짓, 목소리, 표정, 터치 단서 등의 방법을 통칭)

학교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학교(성)폭력 예방 교육 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교육 계획 포함
- 학교(성)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성)폭력 사안처리 절차 준수


장애학생 관련 학교(성)폭력 사안일 경우

- 학교통합지원센터 사안보고 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특수교육지원센터)에 우선으로 동시 보고**
-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시 특수교육전문가 혹은 장애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애학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 조력 제공
- 피해학생 보호 및 가·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현장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

-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 실태조사 안내 및 조사 절차(모집단 및 표본 설계 등) 협조
- 학교 교내·외 교육활동 시 장애학생을 배제하거나 착석 유지를 위해 물리적인 도구나 위력으로 통제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특수학교(급) 교직원 대상 장애인학대 범죄 경력 조회 연 1회 이상 점검 협조
- 교직원 대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연 1시간 이상) 및 교육 실적 제출³³⁾

도움자료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매뉴얼」(교육부·울산광역시교육청, 2024)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도움자료」(서울시교육청, 2023)
-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교육 참고자료

자료명	자료 탑재	QR코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국립특수교육원, 2013)	국립특수교육원 - 에듀에이블 - 장애공감 - 인권교육 - 인권교육자료 - '인권침해' 검색	 국립특수교육원 인권교육자료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5종: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및 정서장애, 학습장애 (국립특수교육원, 2012)	국립특수교육원 - 에듀에이블 - 장애공감 - 인권교육 - 인권교육자료 - '자기보호' 검색	
장애학생 인권교육 콘텐츠 (성교육, 인권침해예방, 자기보호역량 강화, 장애인권웹툰)	국립특수교육원 - 에듀에이블 - 장애공감 - 인권교육 - 인권교육 콘텐츠	 인권교육 콘텐츠

3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6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1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4-1

현장중심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지원체제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개별 특성 이해 및 환경 조정을 통한 학교 생활 적응 지원
- 학생 맞춤형 행동중재를 위한 교원 및 학부모의 역량 강화 지원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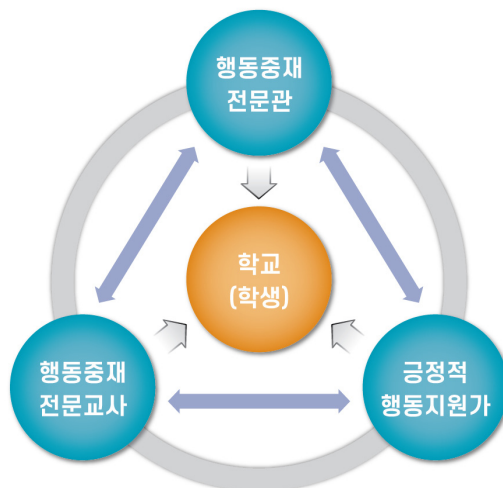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정책기획관-2208, 2023. 9. 18.)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2025. 1. 9.)



주요 내용

가.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전문가 체제 강화

-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지원 영역 확대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 특수교육과와 민주시민교육과의 협업을 통한 폭넓은 학생 지원
- 현장 중심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전문가 체제 구성



- 행동중재전문관³⁴⁾: 4명(특수교육과: 2명, 민주시민교육과: 2명)
- 행동중재전문교사³⁵⁾: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15명(1기 10명, 2025년 2기 5명 선발 예정)
- 긍정적행동지원가³⁶⁾: 45명(퇴직교원)
-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전문가 체제 운영
 - 행동중재전문교사 1기: 2년차 양성과정 및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 행동중재전문교사 2기: 1년차 양성과정 및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 긍정적행동지원가: 행동중재전문교사 운영학교 배치, 분기별 모임 운영

나. 학교차원 긍정적행동지원(SWPBS)³⁷⁾ 운영 확대 및 내실화

- 학교차원 긍정적행동지원(SWPBS) 확대
 - 일반학교(행동중재전문교사 운영학교)의 학교차원 긍정적행동지원 체계 수립 및 안정화
- 학교차원 긍정적행동지원(SWPBS) 내실화
 - 문제행동 예방 및 중재를 통한 바람직한 학교 문화 조성
 - 다층지원체계의 이해와 구체적인 행동중재 방안 마련 및 실행
 - 학교차원 긍정적행동지원의 자료 기반 체계적 실행을 위한 서울PBS플랫폼 활용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 적용
 - ※ 교육부 안내자료 참고
- 학교차원 긍정적행동지원(SWPBS) 운영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실행 역량 강화 지원
 - 긍정적행동지원단 구축 및 운영
 - ※ 학교차원 긍정적행동지원(SWPBS) 운영학교 업무 담당자로 구성
 -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구성 및 운영
 - 학교차원 긍정적행동지원(SWPBS) 실행자료 개발 및 보급

다. 개별학생 행동중재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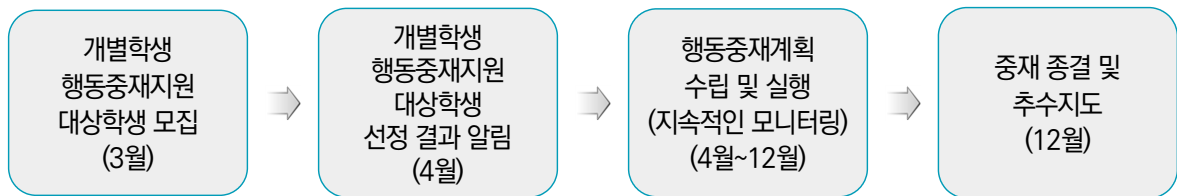
- 행동중재지원단³⁸⁾ 구성·운영
 - 영역별 전문가로 행동중재지원단 구성 및 실행 역량 강화 지원
 - ※ (구성) 교수, 의사, 특수교육전문가, 행동분석 전문가, 작업치료 및 감각통합 전문가 등

34)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운영 및 단위학교 행동중재 요구 발생 시 지원 총괄
 35) 소속학교의 학교차원 긍정적행동지원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행동중재 지원 요구 발생 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역할 수행
 36) 행동중재 요구가 있는 현장에 배치되어 객관적 행동관찰, 측정, 모니터링, 위기(분리)상황 시 담임교사 지원 등 행동중재계획 실행 지원
 37) 학교차원 긍정적행동지원(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긍정적행동지원의 적용단위가 학교 전체로 확장된 것으로, 모든 학생과 교직원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는 체계적, 긍정적, 예방적인 접근
 38) 긍정적행동지원 이론을 토대로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에게 필요한 행동중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역별 전문가 지원단

- 개별학생 행동중재지원 대상 학생 관찰 및 팀 사례 회의 참여, 컨설팅, 교사 연수 학부모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 수행
- 개별학생 행동중재지원 역량 강화 사례 협의 참여

● 현장 밀착형 개별학생 행동중재지원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개별적·전문적 행동중재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정기지원>
 - 문제행동으로 인한 수업 및 학교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전문적·체계적·장기적 중재 필요 시
 - 관리자, 교사,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동중재지원팀 구성 및 협의회 실시
 - 행동중재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장기(1년) 중재 지원



<수시지원>

- 학기 중 교육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긴급하고 신속한 중재 지원 필요시
- 관찰·면담 결과를 토대로 단기(3~5회기) 컨설팅 실시(필요 시 관련기관 연계)
- 참여 학교(교사)의 행동중재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라. 행동중재지원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 학교 관리자의 행동중재지원 역량 강화 연수
 - 위기관리계획 수립 필요성, 긍정적행동지원 이해 및 관리자의 역할 등을 포함한 연수 운영
 - ※ PBS 및 장애학생 행동중재지원 관련 연수 이수 시 관리자 특수(통합)교육 연수 이수 실적으로 인정
- 교사의 행동중재지원 역량 강화 연수
 - 긍정적행동지원 및 다양한 증거 기반의 실제 이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직무연수(30시간) 운영
- 학부모의 행동중재지원 역량 강화 연수
 - 학교·가정에서의 일관된 행동중재지원 실천 방법, 약물치료의 이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수 운영

연수명(가칭)	대상	인원	주요내용	시기
교(원)장·교(원)감 PBS연수	유·초·중·고 교(원)장·감 SWPBS 운영교·개별학생 행동중재지원 대상교	50	긍정적행동지원의 이해 등	2025. 4~5월
행동중재 전문가 되기(30시간)	특수교사	50	증거기반의 실제 이해 등	2025. 7월
긍정적행동지원 학부모 연수	학부모	150명 내외	가정에서의 행동지도, 약물치료의 이해 등	2025. 6월, 10월

마.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플랫폼 및 실행 콘텐츠 운영

- 자료 기반 행동중재 실행을 위한 서울PBS 플랫폼 운영
 - 학교차원 긍정적행동지원 운영학교와 개별학생 행동중재지원 대상학교 플랫폼 적용
 - 자료 기반의 체계적인 행동중재 실행 지원을 위한 서울PBS 플랫폼 고도화 방안 모색
- 서울PBS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채널명: Seoul PBS) 운영 활성화
 - 온라인 강의 개발 및 탑재
- 긍정적행동지원 운영 실행자료 개발·보급
 -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실행자료 개발



교육지원청 및 학교 시행 사항



교육지원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긍정적행동지원 누리집(seoulpbs.sen.go.kr) 운영 및 이용 안내
- 통합교육지원단을 통한 행동중재지원(단기 컨설팅) 적극 연계
 - 통합교육지원단에 행동중재지원 전문가(외부 참여 전문가) 또는 특수교육전문가 위촉 권장





학교

- 학교차원 긍정적행동지원 운영 계획에 따른 실행 충실도 자체 점검
- 학교차원 긍정적행동지원 운영학교 신청(2월): 특수학교 및 행동중재전문교사 운영학교 대상
- 행동중재전문교사 운영학교 신청(3월): 행동중재전문교사 수업 시수 보전 시간강사비 및 학교차원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비 교부
- 개별학생 행동중재지원 정기 지원 신청(3월)


도움자료

서울공정적행동지원 관련 사이트

자료명	자료 탑재	비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긍정적행동지원 누리집	seoulpbs.sen.go.kr	
서울특별시교육청 긍정적행동지원 유튜브(Seoul PBS)	유튜브 - Seoul PBS	

※ 누리집과 유튜브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개발자료 탑재(누리집 탑재 자료 로그인 후 다운로드 가능)

- 「SWPBS 보편적지원 실행 길라잡이(일반학교용)」(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 「SWPBS 보편적지원 실행 길라잡이(특수학교용)」(서울특별시교육청, 2023)
- 「2022 긍정적행동지원 개별지원 사례집」(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 「2022 긍정적행동지원 운영 사례 나눔」(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 「자료기반의 체계적 행동중재를 위한 긍정적행동지원 실행자료」(서울특별시교육청, 2021)
- 「서울PBS 10주년 포럼 자료집」(서울특별시교육청, 2021)

4-2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시스템 내실화



4-2-1

더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더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으로 학생 및 보호자의 교육만족도 제고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참여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인적·물적 관련서비스 지원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가족지원), 제24조(치료지원),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제27조(통학지원),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주요 내용

가. 치료지원 내실화

- 지원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제외 대상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 영역 치료지원 수혜자
- 학교가 아닌 어린이집,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취학의무의 면제·유예자 및 정원외관리 학생
- 국립학교 재학생 및 타 시·도 전학생
- 유치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전공과 과정 포함) 등 재학생이 아닌 자
- ※ 유치원 과정 졸업식(수료식) 이후 유치원을 그만둔 경우(학적중단)는 치료지원 이용 불가

- 치료지원* 영역: 진단·평가 결과통지서를 바탕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

*** 치료지원 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2항)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의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영역 (보건복지부 또는 타 기관 지원을 받는 동일 영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보행훈련, 점자훈련 등 특정한 장애 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영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특수학교 순회학급 학생 재택 치료(진찰료, 출장비 등은 제외하고 순수 치료비만 지원)

- 치료지원 금액: 월 16만원 한도(1일 제한금액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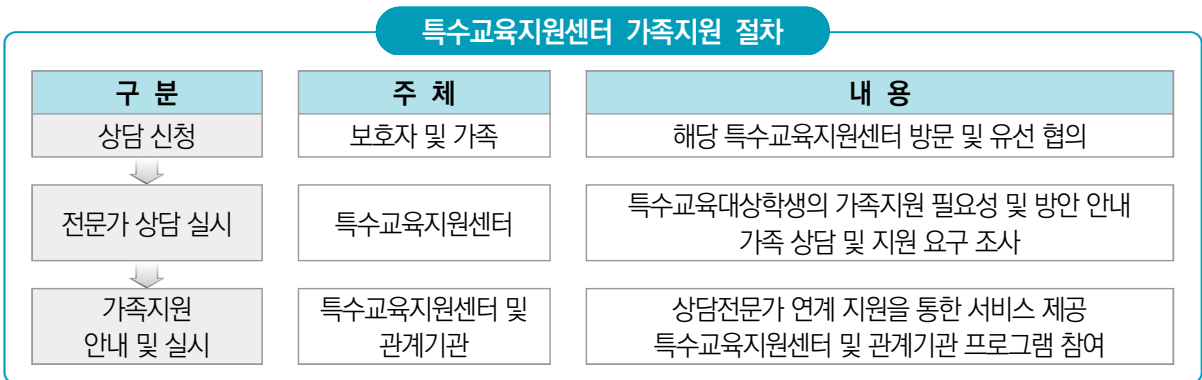
※ 잔액 발생 시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방법

- 전자카드(군센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자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2·3차 의료기관의 의사처방에 따른 물리·작업·심리치료 영역에 한하여 현금지원을 하되, 전자카드와 병행 불가
- 치료지원 서비스 편의성 및 질적 확대를 위한 치료지원 모바일 바우처(모바일결제) 서비스 이용 가능
- ※ 군센카드와 모바일바우처(모바일결제) 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 가능(거래내역 합산 관리)

나. 가족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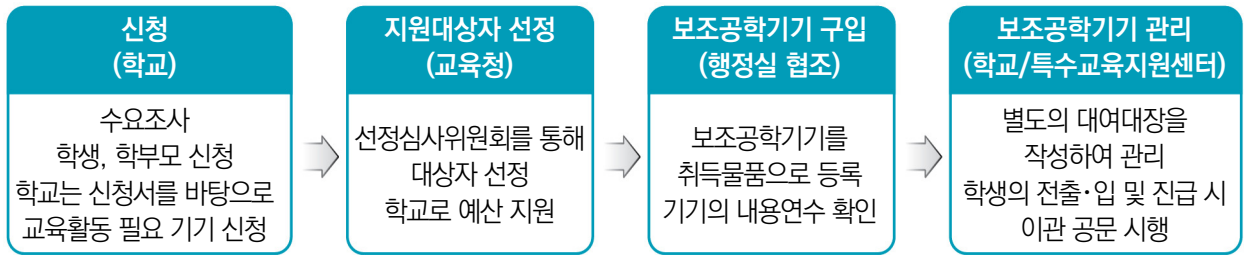
-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지역사회 관계기관이 연계한 장애맞춤형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 가족캠프, 비장애형제자매 지원, 동아리활동, 다양한 교육 및 상담활동
 - 서울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³⁹⁾, 장애인 복지시설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
- 가족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계발하고, 장애자녀 양육 상담을 통해 가족 역량 강화
- 학부모의 사회·정서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개별 맞춤식 학부모 상담(가족상담, 양육상담) 상시 운영
 - 다양한 심리·정서문제 해결지원,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 지원을 통한 학부모 만족도 제고



39)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전달체계로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언하고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www.familynet.or.kr), 전국 212개 지역센터 설치·운영(『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제공 확대

- 지원 대상: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국립 제외)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에 적합한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절차



-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및 편의제공 지원 체제 개선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담당 교사가 보조공학기기를 교수·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문교육 등 현장 지원 강화⁴⁰⁾
- 대여 방법
 - 장애특성에 따른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기기관리를 위해 별도의 대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학기별 사용 점검 확인(연 2회 이상)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대여한 학습보조기는 학년 말(2월)에 반납하고, 필요한 경우 대여 연장 가능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편의 지원

- 통학비 지원 대상
 - 특수학교: 통학버스 이용이 어려운 시각·청각·지체장애학생(전공과 포함)
 - 일반학교(중·고)
 - : 실제 통학거리 2km 이상인 학생 혹은 2km 이내이지만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운 시각, 청각, 지체장애학생
 -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대상학생의 보호자(1인)
 - ※ 통학비 지원 여부는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해 결정
- 통학지원 계획 수립
 - 대상: 국·공·사립 특수학교
 - 통학차량·통학비 지원, 통학지원인력, 통학차량 안전 내용 포함
 - 지원 대상 선정 시 실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연 2회(학기별) 기본비용 지급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련활동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이동 등 편의 제공

40)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운영 가이드」(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활용

-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자(학교장), 운전자 및 통학차량실무사 안전교육 이수 철저⁴¹⁾
 - 학교장 및 통학차량운전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 통학차량실무사: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교육 이수
 - 자체 안전교육 철저

교육지원청 및 학교 시행 사항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별 치료지원 계획 수립·시행
 - 개인별치료지원계획 수합 및 제공기관 명단 제출(2025. 3월)
 - 치료지원 제공기관 승인 및 관리, 전자카드 발급 및 관리
- 치료지원 제공기관 정기점검 강화
 -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의거 연 2회 실시(상반기, 하반기)
 - 치료지원 제공기관 운영 평가를 통한 질 관리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⁴²⁾ 및 결과 보고(2025. 9월 이후)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시 관련서비스 및 장애지원 정보 안내
 - 자치구 연계 장애지원 내용을 파악하여 선제적 서비스 강화

학교

-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관리 철저(대여대장 작성 등)
- 특수학교 통학차량 점검 강화
 - 안전운행기록: 분기별 통학버스관리시스템 제출(schoolbus.ssif.or.kr)
 - 학교장·운전자·통학차량실무사(동승자) 안전교육: 기한(2년 주기) 내 (재)이수 확인 철저


도움자료

자료명	자료 탑재	QR코드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운영 매뉴얼」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2017)	서울특별시교육청 - 기관별서비스 - 민주시민교육과 - 부서업무방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운영 가이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41)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에 따라 운영자, 운전자, 통학지원인력의 안전교육 의무 이수

42)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0호(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4-2-2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 및 역량 강화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참여 내실화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 『병역법』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본 교육 및 직무교육 등)

주요 내용

가. 특수교육실무사 운영·관리 강화

-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와 개별학생의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 학교 지원인력 운영 계획(연수 계획 포함) 수립·운영으로 명확한 업무 내용 안내

지원인력의 역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 ①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⁴³⁾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 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 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한다.
 - 학생의 용변,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정 생활 지원, 식사 지원 등 학생의 개인 욕구를 지원한다.
 -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행동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학생의 적응 행동을 지원한다.
 - 기타 방과후학교, 현장체험학습, 창의적 체험활동, 수련활동,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등 학교장이 부여하는 교육활동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 ※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 등을 대신할 수 없음

- 특수교육실무사 업무평가(근무성적평정 등) 철저
 - 특수교육실무사 교류(교육지원청 간 이동) 및 (3월)정기 전보(교육지원청 내 이동)

43) 방과후학교 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해당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안내, 특수교육정책과-4022(2018.8.20.)], 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에 포함 [초등돌봄 관련 질의 회신, 방과후돌봄정책과-956(2021.3.10.) /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특수교육정책과 -3217(2021.6.4.)]

- 교육(지원)청의 심사를 통한 안정적·균형적인 정원 배정
- 지원학생의 졸업, 전학 등으로 특수교육실무사의 수요가 없을 시 인근 학교로 재배치 등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 근무 조건 확보
- 특수교육실무사 채용 시 교육지원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및 「2025년 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2025)에 따르고, 사립학교는 자체 운영 계획에 의함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지요원) 역량 강화

- 특수교육실무사 직무 역량 강화⁴⁴⁾
 - (신규 채용) 30시간 원격 직무연수 의무 실시
 - (기존 배치) 연 15시간 이상 직무교육 강화
-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사회복지요원 특수교육 관련 직무교육 실시⁴⁵⁾
 - 사회복지요원의 전공과 적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 및 특성, 성별(남학생 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운영
 - (신규 배치) 배치 3개월 이내 원격 직무교육 16시간 이상 이수 필수⁴⁶⁾
 - (기존 배치) 연 2회 이상 학교 내 직무교육 실시
 - ※ 연수내용: 장애이해교육, 장애학생 인권교육,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심폐소생,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사회복지요원의 학생 지원은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른 보조 역할을 수행
 - 사회복지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 세부과업*
 - *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규정』 학습활동, 일상생활지원, 보행 및 이동 지원, 운동 및 재활 지원, 차량 승하차 지도·식사 등
- 특수교육 지원인력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확대
 - 교육지원청별 연 4회 특수교육 지원인력 연수 실시
 - ※ 연수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 유형별 일상생활 보조 방법, 복무규정, 자신에 대한 이해, 상담 등
 -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학교별 자체 연수 계획 수립 및 운영 강화
 - ※ 연수내용: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법(보조공학기기 관리, 점자, 보행지도, 수어 등)

44)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고급' 등, 교육지원청 지원인력 연수, 학교별 자체 연수 등 활용

45) 사회복지요원 직무교육 실시 관련 근거: 『병역법』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46)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사회복지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 강화' 등 활용

다. 현장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보

-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증원 노력
- 신증설 학급에 대한 지원인력 증원으로 신증설에 따른 어려움을 적극적 지원
- 학교의 요구와 고충해소에 부합하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노력
- 교육지원청·자치구 협력을 통한 지원인력(학습도우미 등) 확대 및 효율적 활용
- 재능기부 등을 통한 다양한 자원봉사자 확보 노력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 학교별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지원인력 인건비를 학교운영비로 예산 편성 권장*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내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에 맞는 편의 제공
 - *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권장사업 29번」 191쪽 참조
- 교육지원청별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 학생, 지원 요구, 학교(급)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지원청별 자체 계획 수립·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련활동,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현장체험학습,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인력 인건비 지원
 -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지요원의 인건비로 사용 불가

교육지원청 및 학교 시행 사항

교육지원청

-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연수 계획 수립·시행
- 특수교육 지원인력 적정 배치 계획 수립·시행
- 신규 채용 특수교육실무사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실시
- 신규 배치 사회복지요원 16시간 이상 직무교육 실시(배치 3개월 이내)

학교

- 특수교육실무사 근무성적평가 실시 철저(연 2회/2월, 8월)⁴⁷⁾
 - ※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실무사의 근무성적평가는 소속 학교의 교육공무직 근무성적평가와 함께 실시
- 학교 자체 특수교육 지원인력(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지요원) 운영 계획 수립

47) 「2025년 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2025) 참고

- 사회복무요원은 남학생을 지원하도록 배치하여 여학생 지원에 따른 민원 발생 예방

특수교육실무사 활용 방안

1. 신분

- 교육공무직원

2. 자격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로서, 채용 후 특수교육 지원인력 직무연수(30시간)를 이수할 수 있는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3. 주요 업무




-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 등을 대신할 수 없음
-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방과후 활동, 등하교 지도에 대하여 보조 역할 담당**
 -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 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 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 개인육구: 용변 및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정생활 지원 등
 - 적응행동: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행동 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 기타 요구: 방과후학교, 현장체험학습, 창의적 체험활동, 수련활동,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등 학교장이 부여하는 교육활동 관련 업무
- **특수교육실무사의 구체적인 역할 및 지원 시간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하여 학교장이 결정**
- 특수교육실무사에게 직무와 무관한 업무는 부여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PC 등 사무기기를 제공하도록 노력

4. 활용 및 관리

- 특수학교(급): 복무관리는 학교장 및 행정실, 담당은 특수학급 담임교사
- 특수학급 미설치교: 복무관리는 학교장 및 행정실, 담당은 학급 담임교사

4-2-3

특수학교 서울형 늘봄48) 및 방과후·돌봄 지원체제 강화

-  다양한 활동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소질과 적성 계발
-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학부모 사회활동 참여 도모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양질의 돌봄 제공 및 안정된 환경에서의 성장 지원



근거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6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 『아동복지법』 제44조2(다함께돌봄센터), 제50조(아동복지시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지원)



주요 내용

가. 특수학교 서울형 늘봄학교 운영

- 운영 기관
 - 특수학교: 25교 운영(공립 11교, 사립 14교)
- 지원 대상 및 내용
 - 초1~2학년/맞춤형 프로그램: 초1~2학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응, 놀이·체험, 학습 활동으로 편성·운영(매일 2시간, 무상)하는 늘봄 프로그램
 - 초1~6학년/선택형 교육프로그램(기존 방과후학교): 학생·학부모의 수요 등을 기반으로 정규수업 외 시간에 편성·운영하는 특기·적성 및 교과 관련 늘봄 프로그램
 - 초1~6학년/선택형 돌봄(기존 초등돌봄교실): 별도의 공간(돌봄교실 등)에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전담사(늘봄전담사)가 운영하는 돌봄 프로그램

48)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프로그램

특수학교 늘봄학교 운영 모형

구분	현재까지		→	앞으로		
체제	초·중·고등	방과후 돌봄교실	→	초등 중·고등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서비스	초·중·고등	방과후 돌봄교실	→	초등 중·고등	늘봄과정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공간	초·중·고등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	초등 중·고등	늘봄프로그램교실 방과후교실	늘봄교실 돌봄교실
인력	(신설) (신설) 돌봄전담사(특수애드유케어강사) 방과후프로그램강사		→	늘봄지원실장(늘봄 업무 총괄) 늘봄실무사(늘봄 행정업무 전담) 늘봄전담사(특수애드유케어강사) 방과후프로그램 강사 늘봄프로그램 강사		
프로그램	초·중·고등	방과후	→	초등 중·고등	늘봄프로그램 방과후프로그램	
조직	학교 교육(지원)청	(신설) 특수교육과	→	학교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실 늘봄지원센터	

나. 방과후학교 운영

- 프로그램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적성 개발을 위한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설
- 지원 대상 및 내용
 - 특수학급: 학교(급)별 여건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비 차등 지원
 - [학급당 (초등) 2,500천원, (중등) 2,000천원 기준]
 - 특수학교: 학교별 여건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비 차등 지원(부서당 3,000천원 기준)
 - 특수학교(급)별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예산 외에 방과후학교 운영 경비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추가 경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징수하여 운영 가능
 - 특수학교의 경우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동일 학생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운영 기간: 학교 실정에 따라 기(期)별 운영

● 운영 방법: 개인위탁 및 업체위탁

구분	개인위탁	업체위탁
의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인강사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전부 또는 일부를 업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법
위탁 방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별로 담당할 개인을 공모하여 선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일부나 전체를 위탁하여 운영할 업체를 입찰(2천만원 초과)하거나 수의계약
계약 기간	1년 이내로 하되, 프로그램 운영기간(期)과 일치 총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공모 절차를 다시 실시	1년 계약으로, 동일 업체와 계약이 1년을 초과하거나 1년 이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학년도가 바뀌는 경우에는 재공모
위탁 및 관리	서울시교육청 초·중등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및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계약 실무」 참고	

- 초·중·고등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가능(단,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미지원)
- 방과후학교 운영 시 지원인력이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지무원, 학부모 명예교사,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활용
- 방학 중 특별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한 방학 중 특별프로그램 운영 확대(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초등학교 특수학급 방과후 학교 운영

1. 초등학교 늘봄지원실 인력 구성 및 역할

〈표 IV-16〉 늘봄지원실 인력 구성 및 역할(중략)

구분	인력 구성	역할
늘봄지원실장	교육전문직원 (임기제 교육연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늘봄지원실 업무 총괄 • 늘봄학교 기획·연구 운영 • 늘봄학교 관련 인력 관리·감독 • 늘봄학교 민원 관리 및 갈등 조정 • 구성원(직렬, 직종) 간 역할 조정 등
늘봄지원인력	자원봉사자, 학부모 봉사자, 안전 인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늘봄학교 운영 지원

※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행정업무 포함

2. 초등학교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방식

- 특수학급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특수교사는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늘봄지원실에서는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합니다.

다만,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은 관련 업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급 방과후학교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와 늘봄지원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84P, 103P〉

- 초등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운영
 - 지역의 다양한 인력·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
 - 방법: 지역기관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한 선정
 - ※ 2024학년도 14개 기관 29개 프로그램(카약·패들 수상레저, 골프, 바둑 등 이색·체험) 운영, 학생 170명 참여
 - 운영기간: 2025. 4. ~ 2025. 12.

다.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및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 운영 기관
 -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75교실 운영
 - 특수학교: (공·사립) 29교, 94교실 운영
 - ※ 운영 시간 등은 유·초·중·고 수요조사를 통해 탄력적 운영
- 대상: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다자녀 등 학교(원)별 여건을 고려한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
- 지원 내용
 - 전담인력(특수교육교사):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교실당 1명), 특수학교 돌봄교실(교실당 2명)
 - 운영비: (유치원) 급당 3,500천원, (특수학교) 급당 3,000천원
- 아동학대 예방, 인권보호, 생활지도 등에 대한 특수교육교사 대상 연수 계획 수립 실시
- 특수학교 돌봄교실 참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참여 학생 선정 기간 다양화(학기, 분기, 방학)
- 지역사회 관계기관, 대학 등과 연계한 돌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돌봄교실 참여 학생 지원을 위한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특수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기회 확대 및 안정적 참여를 위한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교육지원청 및 학교 시행 사항

교육지원청

- 학교별 신청서 검토(학급 수, 학생 수, 프로그램 수 등) 후 학교별 예산 차등 지원
- 관내 학교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및 운영 결과 자료를 수합하여 제출
-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학교

-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고려한 방학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 돌봄교실은 자녀돌봄이 실제로 어려운 가정의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 등의 활용 시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학부모 상담 시 확인 필요

도움자료

- 「2024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2025 중등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서울특별시교육청)
 - 자료 탑재: 늘봄학교지원센터 누리집(<https://afterschool.sen.go.kr/web/main.do>)
-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2025 선택형 돌봄(기존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서울특별시교육청)
 - 자료 탑재: 서울특별시교육청-기관별서비스-초등교육과-부서업무방

4-2-4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각급학교⁴⁹⁾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로 교육권 보장 및 학력 신장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보화 지원 확대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주요 내용

가.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안전·편의시설 확충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적용 기관 확대에 따른 이행 철저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⁵⁰⁾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조정 지원
 - 학교 단위 평가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2025학년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장애학생의 평가조정⁵¹⁾ 규정 마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등을 심의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구축
 - 유치원 및 학교 신·증축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 관한 의무 준수⁵²⁾

49)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0) 벌칙조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51) 평가의 본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항의 제시 형태, 반응 형태, 검사 시간, 검사 환경 등을 조정하는 것과 같이 평가 전·중·후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노력

5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 사이트(www.eduable.net) 활용
 - 멀티미디어북, 소프트웨어교육자료, 실감형교육자료 등 에듀테크 기반 교수 학습 자료 활용
 -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EBS 수능 방송교재와 학습 관련 참고서 및 문제집 점역자료 지원
 - ※ 시각장애 대체자료, EBS 교재 점역 및 동영상 강의 파일 제공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급학교의 정보화 관련 사항 준수
- 특수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보조공학기기 적극 활용에 따른 '접근성'설정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지원
- 중1, 고1 대상(특수학교 포함) 스마트 기기 「디벗」 보급



에듀에이블

교육지원청 및 학교 시행 사항

교육지원청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적정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예산 등 관련 부서와 협조
- 지원장학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관련 법령 안내 등 지원 및 현황 점검

학교

- 학교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및 편의시설 유지 보수 철저
- 『2025학년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제9호(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평가조정 실시

도움자료

- 「장애학생 평가조정 매뉴얼」(국립특수교육원, 2016)
 - 자료 탑재: 국립특수교육원 - NISE발간물 - 연구보고서
-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도움 자료」(교육부, 2021)
 - 자료 탑재: 국립특수교육원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장애학생
평가조정 매뉴얼

정당한 편의제공

영역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세부 내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법 제21조,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3)*	-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수어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함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법 제28조, 시행령 제26조 제29조)**	- 취학 편의 및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수리	•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학습시설 및 교육활동 공간에서 이동·접근하기 위한 설비 및 이동수단
	- 지원인력 배치	• 지원인력 배치(필요 시)
	- 학습참여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대여	•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 대여
	- 보조건·휠체어를 위한 여유공간 확보	•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수어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무지점자단말기 등
	- 교육과정 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 교육과정 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 방법의 제공
- 그 밖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통학과 관련한 교통편의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 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Memo

A large, light gra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부모의 신뢰

2025 서울특수교육

함께의 가치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특수교육

II

행정 사항

교육지원청 및 본청 소속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는
각종 제출 서식 목록을 확인하여 제출

※ 각종 제출 서식은 별도 공문으로 안내

[각종 제출 안내]

2024. 4. 1.자 특수교육 통계 제출 자료와 일치하게 작성하여 제출

구분	제출내용	제출방법	제출일	제출처	비고
특수 학교	2025 특수학교 학생현황	공문의 【붙임 3】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2025. 4. 4.(금)	본청 특수 교육과	본 자료는 특수학교 설립 및 학생배치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예정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기재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
	2025 특수학교 교원 일람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교원의 자료만 제출하며, 동의서는 해당 학교에서 보관함.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미제출한 교원도 성명, 성별, 현임교근무연수, 담당업무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함
본청 소속 고등 학교	2025 학교별 특수교육 대상학생 현황	【붙임 4】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2025. 4. 4.(금)	본청 특수 교육과	본 자료는 특수학교 설립 및 학생배치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예정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기재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
	2025 특수학급 교원 일람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교원의 자료만 제출하며, 동의서는 해당 학교에서 보관함.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미제출한 교원도 성명, 성별, 현임교근무연수, 담당업무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함
교육 지원청	1. 특수학급 설치 현황 2. 학교(유치원)별 특수교육대상 학생 현황 3. 특수학급 교사 현황	【붙임 5】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2025. 4. 4.(금)	본청 특수 교육과	교육지원청에서는 특수학교, 본청소속고를 제외한 관내 모든 학교(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는 학교) 에서 【붙임 4】를 수합하여 【붙임 5】양식에 작성 제출하되, 학생배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학교에서 정확하게 기재하고 기재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
	4. 2025 특수학급 교원 일람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교원의 자료만 제출하며, 동의서는 해당 학교에서 보관함.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미제출한 교원도 성명, 성별, 현임교근무연수, 담당업무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함

서식

2025학년도 ○○지구 자율장학회 연간 사업 계획 및 결과(예시)

주관학교: 서울○○학교

지 구	○○지구	간사학교명	○○학교	부간사학교명	○○학교
학교명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영역	연번	사 업 명	추 진 내 용	시기	주관교	비고
학교 간 방문장학 활동	1	○○지구 교장단 회의	- 지구자율장학회 사업 협력 방안	3월	○○학교	
	2			4월	○○학교	
	3					
	4					
수업혁신 및 교수학습 방법공유	1	교사 지구단위 수업공개 상호참관	- 단위학교당 3명 참관	○.○.	○○학교	
	2	수학과 수업자료 제작 활용 연수(발표)	- 연구동아리 공동 제작 수업자료 공유	연중	○○학교	
	3					
	4					
교원연수 및 생활지도	1	중도·중복장애 수업 모델 연수	- 단위학교당 12명 참관	○.○.	○○학교	3시간
	2	장애학생 성교육 지도방안 연수	- 성교육 및 생활지도 관련 연수	○.○.	○○학교	2시간
	3					
	4					

학생의 꿈
교사의 금지
부모의 신뢰

2025 서울특수교육

함께의 가치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특수교육

비 무 목

특수교육 관련 안내 및 기관 현황

1. 유·초·중·고 특수학급 지원 예산 안내
2. 특수교육 관련 안내
3. 2025학년도 서울 특수교육 기관 현황

1

유·초·중·고 특수학급 지원 예산 안내



○ 특수학급 운영비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 관련 교재·교구, 특수학급 운영 및 활동 경비, 통합교육 지원(통합학급 연계 교육 활동, 장애이해교육, 장애인권교육 등) 등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급당 3,000천원~4,000천원 내외 지원

○ 특수학급 신·증설비 지원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한 시설·교구비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20,000천원 초·중·고: 40,000천원

○ 특수학급 이전 및 환경개선비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학급 여건 개선을 위한 동일 학교 내 이전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노후 특수학급 환경 개선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조사 실시 후 심사를 통해 지원 학교 선정(학급당 30,000천원~40,000천원 내외)

○ 특수학급 신규 설치 인센티브 (※ 학교지원과 지원)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학급 신규 설치(증설 학교 제외)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환경개선비: 교당 1억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 지원비: 교당 50,000천원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연 10,000천원씩 3년간 지원

○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교육비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학급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비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급당 2,000천원 지원 ※ 특수학급 운영비 내에 포함하여 교부

2

특수교육 관련 안내



1) 2025년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 일 시: 2025. 9. 9.(화) ~ 9. 10.(수) 1박2일
- 장 소: 강원도 홍천군 비발디파크(예정)
- 주 최: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
- 후 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내용: 특수학교(급) 학생 정보경진대회 및 e스포츠대회 등
- 참석대상: 특수학교(급) 학생, 일반학생, 지도교사, 학부모, 시·도교육청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
- ※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서울시 예선대회: 7월 중 (예정)

2) 2025년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 일 시: 2025. 9. 30.(화) ~ 10. 1.(수)
- 장 소: 부산광역시
- 주 최: 교육부
- 주 관: 부산광역시교육청
- 대상영역: 감각장애(시각·청각) 및 지체장애
- 참가대상: 전국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 장애학생
- ※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서울시 예선대회: 6월 중(예정)

3) 2025년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 일 시: 2025. 5. 13.(화) ~ 5. 16.(금) 예정
- 장 소: 경상남도(김해 일원, 예정)
- 주 최: 대한장애인체육회
- 주 관: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기종목: 골볼, 보치아, 수영, 씨름, 육상, 축구, 탁구, e스포츠, 실내조정 등
- 참석대상: 전국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 특수교육교원 등

4) 2025년 장애학생 체육페스티벌 「서울림 운동회」

- 일 시: 2025. 11. 예정
- 장 소: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예정)
- 주 최: 스포츠조선
- 주 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위피크주식회사
- 후 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장애인체육회
- 경기종목: 농구(골밀 슛 릴레이), 배구(빅발리볼), 스포츠스태킹, 단체줄넘기 등
- 참석대상: 서울 소재 특수학급 설치 중·고등학교 장애 및 비장애학생

5) 2025년 특수교육통계 조사 실시

- 대 상: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일반학교
- 기 간: 2025. 4.
- 내 용: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 기관 및 교원 등 특수교육 관련 주요 현황
- 방 법: 나이스 통계 자료 입력 및 점검, 제출 기한 준수
- 제출처: 국립특수교육원

6) 202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작성 자료 제출

- 대 상: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 기 간: 2025. 6.
- 내 용: 특수교육 관련 현황에 대한 보고서 국회 제출
- 방 법: 엑셀 서식 자료 입력 및 점검, 제출 기한 준수
- 제출처: 국립특수교육원

7) 2025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조사 실시

- 대 상: 특수교육대상자(초4~전공과), 학부모, 교원
- 기 간: 2025. 5. ~ 10. (예정)
- 내 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관한 사항
- 방 법: 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대면조사 실시
- 주관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2025학년도 서울 특수교육 기관 현황



가. 특수학교 현황

교육청	학교명	장애영역	운영과정	주소	전화번호	설립별
서부	한국우진학교	지체장애	유·초·중·고·전공	마포구 월드컵북로38길 21	6388-5800	국립
	연세대학교재활학교	지체장애	유·초·중·고·전공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116동	2123-8141	사립
	은평대영학교	지적장애	유·초·중·고·전공	은평구 갈현로11길 30	353-2040	사립
남부	서울정진학교	지적장애	초·중·고·전공	구로구 부일로9길 158	2688-1303	공립
		지체장애	(유)·초·중·고·전공			
	성베드로학교	지적장애	초·중·고·전공	구로구 연동로 320	2612-6413	사립
북부	서울정민학교	지체장애	유·초·중·고·전공	노원구 공릉로58길 24	978-8405	공립
	서울도솔학교	지적장애	초·중·고·전공	도봉구 평화로15번길 9-26	955-0523	공립
	서울동천학교	지적장애	유·초·중·고·전공	노원구 노원로18길 41	974-9576	사립
중부	서울맹학교	시각장애	유·초·중·고·전공	종로구 필운대로 97	731-6772(종로) 731-6881(용산)	국립
	서울농학교	청각장애	유·초·중·고·전공	종로구 필운대로 103	737-0659	국립
	서울경운학교	지적장애	초·중·고·전공	종로구 삼일대로 454	3668-5100	공립
	수도사랑의학교	지적장애	유	종로구 사직로7길 17	739-9868~9	사립
강동송파	한국육영학교	정서장애	유·초·중·고·전공	송파구 충민로6길 15	443-9781	사립
	한국구화학교	청각장애	유·고	강동구 고덕로 295-59	428-0873	사립
		지적장애	유·초·중·고·전공			
	주몽학교	지체장애	유·초·중·고·전공	강동구 상암로 369	070-8255-0507 070-8255-0500	사립
지적장애		유·초·중·고·전공				
광성하늘빛학교	지적장애	유	송파구 올림픽로 625	474-1004	사립	
강서양천	서울서진학교	지적장애	초·중·고·전공	강서구 양천로55길 22	6981-9000	공립
		지체장애	(유)·(초)·(중)			
	교남학교	지적장애	초·중·고·전공	강서구 까치산로22길 38	2607-2456	사립
강남서초	서울정애학교	정서장애	초·중·고·전공	강남구 봉은사로81길 16	540-7826	공립
	서울나래학교	지체장애	유·초·중·고·전공	서초구 염곡안1길 25	2058-0190	공립
	밀알학교	정서장애	유·초·중·고·전공	강남구 일원로 90	3412-1133	사립
	다니엘학교	지적장애	유·초·중·고·전공	서초구 현릉로468길 21-16	445-9435	사립
동작관악	서울정문학교	지적장애	초·중·고·전공	관악구 난향3길 31	869-7188	공립
	서울삼성학교	청각장애	유·초·중·고	동작구 양녕로30길 19-4	823-7430	사립
	서울새롬학교	지체장애	유·초·중	관악구 보라매로 44	840-3535	사립
	누리학교	지적장애	유	동작구 상도로 53	8243-8888	사립
성동광진	서울광진학교	지적장애	초·중·고·전공	광진구 강변역로 18	6715-9001	공립
성북강북	서울정인학교	지적장애	유·초·중·고·전공	강북구 인수봉로 119-20	983-4321	공립
	서울다원학교	지적장애	초·중·고·전공	성북구 성북로31길 5-15	762-8049	공립
	서울애화학교	청각장애	초·중·고·전공	강북구 미아동 솔매로52길 31	987-5161	사립
		지적장애	유·초·중·고·전공			
	서울효정학교	시각장애	유	강북구 삼양로63길 33	981-2022	사립
	한빛맹학교	시각장애	초·중·고·전공	강북구 삼양로73가길 47	989-9135	사립
계	32교	국립: 3교, 공립: 11교, 사립: 18교, ()는 순회				

나. 유치원 특수학급 현황

교육청	학교수	학급수	설치학교명(학급수)	행정구청	비고
동부	10	13	동원초병유(1), 목현초병유(1), 새솔유(3)*, 신목초병유(1), 신현초병유(1), 양원숲초병유(1), 중흥초병유(2)	중랑구 (7개원 10학급)	
			이문유(1)*, 전동초병유(1), 휘경유(1)*	동대문구 (3개원 3학급)	
서부	16	16	북한산유(1)*, 산울림유(1)*, 수색초병유(1), 신도초병유(1), 연은초병유(1), 응암초병유(1), 은빛유(1)*, 진관유(1)*	은평구 (8개원 8학급)	
			상지초병유(1), 성서초병유(1), 성산초병유(1), 용강초병유(1)	마포구 (4개원 4학급)	
			가재울초병유(1), 금화초병유(1), 북성유(1)*, 흥제초병유(1)	서대문구 (4개원 4학급)	
남부	16	17	개봉초병유(1), 고척초병유(1), 세곡초병유(1), 영서초병유(1), 하늘숲유(1)*, 향동유(2)*	구로구 (6개원 7학급)	
			금나래초병유(1), 두산초병유(1), 문교초병유(1), 정심초병유(1)	금천구 (4개원 4학급)	
			도신초병유(1), 영등포초병유(1), 영동초병유(1), 영중초병유(1), 우신초병유(1), 윤중초병유(1)	영등포구 (6개원 6학급)	
북부	9	9	수락산유(1)*, 수락초병유(1), 신상계초병유(1), 연지유(1)*, 태랑초병유(1)	노원구 (5개원 5학급)	
			마들유(1)*, 방학유(1)*, 송미초병유(1), 신창초병유(1)	도봉구 (4개원 4학급)	
중부	4	4	장충유(1), 남산초병유(1)	중구 (2개원 2학급)	
			서빙고초병유(1), 청파유(1)*	용산구 (2개원 2학급)	
강동 송파	20	23	강덕초병유(1), 강빛초병유(2), 강솔유(2)*, 고일초병유(1), 명일유(1)*, 천호초병유(1), 강현유(1)*	강동구 (7개원 9학급)	강현유 신설(1)
			가락초병유(1), 거여초병유(1), 거원초병유(1), 방이초병유(1), 솔가람유(1)*, 솔방울유(1)*, 송파위례유(1)*, 세륜초병유(1), 신천초병유(1), 영풍초병유(1), 위례별유(2)*, 위례솔초병유(1), 잠신초병유(1)	송파구 (13개원 14학급)	

교육청	학교수	학급수	설치학교명(학급수)	행정구청	비고
강서 양천	15	18	공향초병유(1), 금녕화유(1)*, 마곡유(2)*, 송정초병유(1), 수명유(2)*, 신곡초병유(1), 월정초병유(1), 탐산초병유(1)	강서구 (8개원 10학급)	
			강신초병유(1), 경인유(1)*, 신기초병유(1), 신정유(2)*, 양동초병유(1), 양목초병유(1), 장수초병유(1)	양천구 (7개원 8학급)	
강남 서초	17	18	개원초병유(1), 개포유(2)*, 논현초병유(1), 대현초병유(1), 세명유(1)*, 신구유(1)*, 역삼초병유(1), 영희초병유(1), 율현초병유(1), 은곡유(1)*	강남구 (10개원 11학급)	
			서래초병유(1), 어진유(1)*, 언남초병유(1), 우면초병유(1), 우솔초병유(1), 양재유(1)*, 청계숲유(1)*	서초구 (7개원 7학급)	
동작 관악	14	14	문창초병유(1), 상도유(1)*, 은로유(1)*	동작구 (3개원 3학급)	
			관악초병유(1), 구암유(1)*, 난곡초병유(1), 남부초병유(1), 남현유(1)*, 봉천초병유(1), 신성초병유(1), 신우유(1)*, 원당초병유(1), 은천초병유(1), 청림유(1)*	관악구 (11개원 11학급)	
성동 광진	8	8	경동유(1)*, 금호초병유(1), 사근초병유(1), 송신초병유(1), 용답초병유(1)	성동구 (5개원 5학급)	
			구의초병유(1), 양남초병유(1), 중광초병유(1)	광진구 (3개원 3학급)	
성북 강북	10	13	삼선초병유(1), 석관초병유(1), 성북초병유(1), 송례초병유(1), 장위초병유(1), 좋은소리유(2)*	성북구 (6개원 7학급)	
			미양초병유(1), 수유초병유(1), 수송초병유(1), 우이유(3)*	강북구 (4개원 6학급)	
계	139	153	전년 대비 순증: +1개원, +1학급 (단설: 44개원 57학급, 병설: 95개원 96학급)	신설: 1개원, 1학급 감축: 0개원, 0학급	

다. 초등학교 특수학급 현황

교육청	학교수	학급수	설치학교명(학급수)	행정구청	비고
동부	40	74	군자(2), 답십리(2), 동답(1) , 배봉(2), 신답(2), 안평(1), 용두(1), 이문(3), 장평(2), 전곡(2), 전농(2), 전동(2), 종암(1), 청량(2), 흥릉(1), 흥파(2), 휘경(2), 휘봉(2)	동대문구 (18교 32학급)	동답 신설(1)
			동원(2), 망우(1), 면남(2), 면동(2), 면목(2), 면북(1), 면일(3), 목동(2), 묵현(2), 봉화(3), 상봉(2), 새솔(2), 신내(2), 신목(1), 신현(1), 양원숲(1), 원목(2) , 중곡(2), 중랑(2), 중목(2), 중화(2), 중흥(3)	종량구 (22교 42학급)	원목 증설(1)
서부	60	114	갈현(3) , 구산(2), 구현(3), 녹번(2), 대은(1), 대조(3), 북한산(1), 불광(3), 상신(2), 서신(2), 수리(2), 수색(1), 신도(1), 신사(2), 어울(1), 연광(2), 연신(2), 연은(2), 연천(2), 은명(3) , 은빛(3), 은진(2), 은평(2), 응암(3), 증산(2), 진관(2)	은평구 (26교 54학급)	갈현 증설(1) 은명 증설(1) 구산 감축(1)
			공덕(2), 동교(1), 마포(2), 상암(2) , 상지(2), 서강(2), 서교(1), 성산(2), 성서(2), 소의(2), 신북(1), 신석(2), 아현(2), 염리(2), 용강(2), 중동(2), 창천(2), 하늘(2), 한서(1)	마포구 (19교 34학급)	상암 증설(1)
			가재울(2), 고은(2), 금화(2), 대신(1), 미동(1), 북가좌(2), 북성(1), 안산(2), 연가(2), 연희(2), 인왕(1), 창서(2), 흥연(2), 흥은(2), 흥제(2)	서대문구 (15교 26학급)	
남부	56	112	개명(2), 개봉(2), 개웅(2), 고산(2) , 고척(2), 구로(2), 구로남(2), 구일(2), 동구로(2), 매봉(3), 세곡(2), 신구로(2), 신도림(2), 오류(2), 오류남(2), 오정(2) , 온수(2), 영서(2), 영일(2), 천왕(3), 하늘숲(2), 향동(3)	구로구 (22교 47학급)	고산 증설(1) 오정 증설(1)
			금나래(3), 금동(1), 금산(1) , 금천(2) , 독산(4), 두산(2), 문교(1), 문백(2), 문성(3), 백산(2), 시흥(3), 신흥(2), 안천(2), 영남(1), 정심(2), 탑동(3)	금천구 (16교 34학급)	금산 신설(1) 금천 증설(1)
			당산(1), 당중(2), 대길(2), 대동(2), 대방(2), 대영(2), 도림(2), 도신(1), 문래(1), 신대림(1), 신영(2), 여의도(2), 영동(2), 영등포(2), 영신(2), 영원(1), 영중(2), 우신(2)	영등포구 (18교 31학급)	
북부	44	72	계상(2), 공연(2), 노원(2), 녹천(1), 당현(1), 덕암(1) , 불암(1), 상경(2), 상계(2), 상원(1), 상월(1), 상천(2), 선곡(2), 수락(2), 수암(2), 신계(2), 신상계(2), 연지(2), 연촌(2), 용동(2), 용원(2), 월계(1), 중계(1), 중평(1), 중현(2), 청계(2), 태랑(1), 태릉(1)	노원구 (28교 45학급)	덕암 신설(1)
			가인(2), 누원(2), 도봉(2), 방학(2), 백운(2), 송미(2), 신방학(1), 신학(2), 신화(2), 쌍문(2), 오봉(1), 월천(2), 창도(1), 창동(1), 창림(2), 창원(1)	도봉구 (16교 27학급)	
중부	31	45	남산(2), 덕수(1), 봉래(2), 신당(1), 장충(2), 청구(2), 충무(1), 흥인(2)	중구 (8교 13학급)	흥인 증설(1)
			교동(1), 독립문(1), 매동(1), 명신(2), 세검정(1), 창신(1), 청운(2), 혜화(2), 효제(1), 서울사대부(국립, 1)	종로구 (10교 13학급)	
			금양(1), 남정(1), 삼평(1), 사빙고(2), 신용산(2), 용산(1), 용암(1), 원효(1), 이태원(2), 창파(2), 한강(2), 한남(1), 후암(2)	용산구 (13교 19학급)	보광 감축(2)

교육청	학교수	학급수	설치학교명(학급수)	행정구칭	비고
강동 송파	58	91	강덕(1), 강동(2), 강명(2), 강빛(1), 강술(1), 강일(2), 고덕(2), 고일(1), 고현(1), 길동(2), 대명(1), 둔촌(1) , 명덕(1), 명원(1), 명일(2), 묘곡(1), 상일(1), 선린(1), 성내(2), 성일(2), 신명(1), 신암(2), 위례(1) , 천동(2), 천일(2), 천호(2), 한산(2)	강동구 (27교 40학급)	둔촌 신설(1) 위례 신설(1)
			가동(1), 가락(1), 개롱(1), 거여(2), 거원(2), 남천(2), 마천(2), 문덕(1), 문정(2), 문현(2), 방이(2), 삼전(3), 석촌(3), 송례(2), 송파(1), 세륜(2), 신가(2) , 신천(2), 영풍(2), 오금(1), 위례별(3), 위례솔(1), 잠실(1), 잠일(1), 잠전(2), 중대(1), 토성(1), 평화(1), 풍납(2), 풍성(1), 해누리(1)	송파구 (31교 51학급)	신가 증설(1)
강서 양천	55	95	가곡(1), 가양(2), 개화(2), 공진(2), 공항(3), 내발산(2), 등마(2), 등명(1), 등서(1), 등양(1), 등원(2), 등촌(1), 발산(2), 방화(1), 백석(1), 삼정(1), 송정(3) , 송화(1), 수명(1), 신곡(2), 신월(2), 신정(3), 염경(1), 염동(1), 염창(3) , 월정(3), 정곡(2), 치현(2) , 탑산(2), 화곡(2), 화일(3)	강서구 (31교 56학급)	송정 증설(1) 염창 증설(1) 치현 증설(1)
			강서(3), 강신(1), 강월(1), 경인(1) , 계남(1), 남명(2), 목동(2), 목운(1), 서정(1), 신기(1), 신강(2), 신남(2), 신목(2), 신원(2), 신은(2), 양강(2), 양동(2), 양명(1), 양목(2), 양원(2), 양화(2), 은정(2), 정목(1), 지향(1)	양천구 (24교 39학급)	경인 신설(1)
강남 서초	42	72	개원(2) , 개현(1), 개포(2), 구룡(2), 논현(2), 대곡(1), 대모(1), 대왕(2), 대진(2), 대청(2), 대현(2), 도곡(2), 도성(1), 삼릉(1), 세명(2), 수서(2), 신구(2), 양전(1), 언북(2), 연주(2), 역삼(2), 영희(2), 왕복(2), 울현(2), 일원(1), 자곡(2), 포이(1)	강남구 (27교 46학급)	개원 증설(1)
			방배(2), 방일(1), 서래(2), 서원(2), 서일(1), 서초(2), 신중(1), 양재(2), 언남(3), 우면(1), 우솔(2), 우암(2), 원촌(2), 이수(2), 교대부초(국립, 1)	서초구 (15교 26학급)	
동작 관악	41	80	강남(2), 남사(1), 남성(2), 노량진(2), 대림(2), 동작(2) , 문창(2), 보라매(2), 본동(1), 삼일(1) , 상도(3) , 상현(2), 신길(2), 신남성(1), 신상도(2), 영본(1), 영화(2), 은로(2), 흑석(2)	동작구 (19교 34학급)	삼일 신설(1) 동작 증설(1) 상도 증설(1)
			관악(3), 구암(2), 난곡(2), 난우(2), 난향(2), 남부(3), 당곡(2), 미성(2), 봉천(2), 봉천(2) , 사당(3) , 삼성(1), 신림(2), 신봉(2), 신성(2), 신우(1), 원당(2), 원신(3), 은천(4), 인현(1), 조원(2), 청룡(1)	관악구 (22교 46학급)	봉천 증설(1) 사당 증설(1)
성동 광진	36	60	경동(2), 경수(2), 경일(1), 금복(2), 금옥(2), 금호(2), 동명(2), 동호(1), 마장(2) , 무학(2), 사근(2), 성수(1), 송원(1), 송신(2), 옥수(2), 옥정(2), 용답(2), 행당(2), 행현(1)	성동구 (19교 33학급)	마장 증설(1)
			광장(2), 광진(1), 구남(1) , 구의(2), 동의(2), 동자(1), 성자(1), 신양(2), 신자(2), 양남(2), 양진(1) , 용곡(1) 용매(2), 자양(2) , 장안(2), 중광(1), 중마(2)	광진구 (17교 27학급)	구남 신설(1) 양진 신설(1) 자양 증설(1) 중마 증설(1)
성북 강북	37	67	개운(1), 길원(2), 길음(1), 둔암(2), 동신(2), 미아(2), 삼선(1), 석계(1), 석관(2), 성북(2), 송곡(2), 송덕(2), 송례(3), 송인(2), 안암(2), 월곡(2), 일신(1), 장곡(2), 장월(1), 장위(2), 정덕(3), 정릉(1), 정수(1), 청덕(2)	성북구 (24교 42학급)	
			미양(2), 번동(2), 삼각산(1), 삼양(3) , 송중(2), 송천(2), 수송(2), 수유(2), 오현(1), 우이(2), 유현(2), 인수(2), 화계(2)	강북구 (13교 25학급)	삼양 증설(1)
계	500	882	전년 대비 순증: +8교, +27학급 (국립: 2교 2학급, 공립: 498교 882학급)	신설: 9교, 9학급 / 증설: 21교 21학급 감축: 2교, 3학급	

라. 중학교 특수학급 현황

*남자, **여자

교육청	학교수	학급수	설치학교명(학급수)	행정구청	비고
동부	19	34	동원(1), 면목(1), 봉화(2), 상봉(1), 신현(2), 용매(2), 원목(1), 장안(3), 중량(1), 중화(3), 태릉(1)	중량구 (11교 18학급)	
			동대문(2), 성일(1), 송인(2), 장평(3) , 전동(2), 전일(1), 청량(3), 휘경(2)	동대문구 (8교 16학급)	장평 증설(1)
서부	27	40	구산(2), 덕산(1), 불광(2), 상신(1), 신도(2), 연서(1), 연신(1), 연천(1) , 은평(2), 증산(1), 진관(2)	은평구 (11교 16학급)	연천 신설(1)
			상암(2), 서울여(1)**, 성사(2), 성산(1), 성서(1), 신수(1), 아현(2), 중암(1), 창천(2)	마포구 (9교 13학급)	
			가재울(3), 서연(1), 신연(2), 연북(1), 연희(1), 인왕(2), 흥은(1)	서대문구 (7교 11학급)	
남부	30	48	개봉(2), 경인(3), 고척(1), 구로(1), 구일(1), 신도림(1), 영림(1), 영서(2), 오남(1), 오류(1), 천왕(2) , 향동(2)	구로구(12교 18학급)	천왕 증설(1)
			가산(2), 난곡(1), 문성(1), 세일(2), 시흥(3), 인천(1), 한울(2)	금천구(7교 12학급)	
			당산서(1) , 당산(1), 대림(1), 대영(2), 선유(2) , 신길(2), 양화(1), 여의도(2), 영남(3), 영원(2), 윤중(1)	영등포구 (11교 18학급)	당산서 신설(1) 선유 증설(1)
북부	23	35	공릉(1), 노원(2), 녹천(1), 상경(1), 상계(2), 상계제일(2), 수락(2), 신창(2), 은곡(1), 월계(2), 중계(1), 중원(2), 중평(1), 태릉(1), 하계(1), 한천(2)	노원구(16교 24학급)	
			노곡(1), 도봉(1), 방학(2), 백운(2), 신도봉(2), 신방학(1) , 창동(2)	도봉구(7교 11학급)	신방학 신설(1)
중부	9	16	덕수(2), 창덕여(2)**	중구(2교 4학급)	
			청운(1)*, 서울사대부여(국립, 1)**, 덕성여(사립, 1)**	종로구(3교 3학급)	
			선린(3), 용강(1), 용산(2)*, 한강(3)	용산구(4교 9학급)	

교육청	학교수	학급수	설치학교명(학급수)	행정구청	비고
강동 송파	29	42	강빛(1), 강동(2), 강명(2), 강일(1), 고덕(1), 둔촌(1), 명일(2), 성내(2), 신명(1), 신암(1), 천일(2), 천호(2), 한산(1)	강동구(13교 19학급)	
			가락(1), 가원(1), 거원(1), 문정(1), 문현(2), 방산(1), 방이(1), 송례(2), 송파(2), 신천(1), 오륜(1) , 오주(2), 우림(2), 잠신(2), 풍납(2), 해누리(1)	송파구(16교 23학급)	오륜 신설(1)
강서 양천	19	29	공향(2), 등원(2), 마곡(1), 방원(1), 백석(1), 성재(1), 수명(1), 염경(1), 화원(1)	강서구(9교 11학급)	
			강신(1), 금옥(1), 목동(2), 목운(1), 신남(2), 신서(2), 신원(2), 신월(2), 양강(3), 양동(2)	양천구(10교 18학급)	
강남 서초	19	25	개원(3), 개포(1), 구룡(1), 대왕(1), 도곡(1), 세곡(2), 수서(2), 신사(1), 언북(1), 역삼(2)	강남구(10교 15학급)	
			경원(1), 내곡(1), 방배(1), 서일(1), 서초(1), 신반포(1), 언남(1), 영동(2) , 원촌(1)	서초구(9교 10학급)	영동 증설(1)
동작 관악	21	30	강남(1), 강현(1), 국사봉(2), 남성(2), 대방(1), 문창(1), 사당(1), 상현(1), 영등포(2), 장승(2)	동작구(10교 14학급)	
			관악(1), 구암(2), 난우(2), 남서울(2), 당곡(2), 미성(1), 봉림(1), 봉원(2), 삼성(1), 신관(1), 신림(1)	관악구(11교 16학급)	
성동 광진	10	18	경수(2), 광희(2), 동마(2), 성원(1), 옥정(2)	성동구(5교 9학급)	
			광진(2), 구의(2) , 양진(2), 용곡(1), 자양(2)	광진구(5교 9학급)	구의 증설(1)
성북 강북	16	28	길음(1), 북악(2) , 삼선(2)*, 석관(2), 송곡(2), 월곡(2), 종암(2), 서울사대부(국립, 1)*	성북구(8교 14학급)	북악 증설(1)
			강북(2), 솔샘(2), 번동(2), 수송(1), 수유(1), 인수(2), 창문여(사립, 2)**, 화계(2)	강북구(8교 14학급)	
계	222	345	전년 대비 순증: +4교, +10학급 (국립: 2교 2학급, 공립: 218교 340학급, 사립: 2교 3학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4교, 4학급 / 증설: 6교 6학급 • 감축: 0교, 0학급 	

마. 고등학교 특수학급 현황

*남자, **여자

교육청	학교 수	학급 수	설치학교명(학급수)			행정구청	비고
			국립, 공립	사립	본청소속고		
동부	8	24	면목(3)*, 신현(3), 종화(3), 태릉(3)	송곡여(3)**		종량구(5교 15학급)	
			청량(3), 휘봉(3)	해성여(3)**		동대문구(3교 9학급)	
서부	11	30	신도(3), 은평(3), 진관(3)	동명여(3)**, 송실(3)*, 충암(2)*		은평구 (6교 17학급)	충암 증설(1)
			상암(3), 서울여(3)**	경성(1)		마포구(3교 7학급)	
			가재울(3)	명지(3)		서대문구(2교 6학급)	
남부	14	39	경인(3), 고척(3), 신도림(3)	우신(2)		구로구(4교 11학급)	우신 증설(1)
			금천(3), 독산(3)	문일(3)*		금천구(3교 9학급)	
			관악(3), 대영(3), 선유(3), 여의도(3)* 여의도여(1)*, 영등포여(3)**, 영산(3)			영등포구 (7교 19학급)	
북부	11	32	노원(3), 불암(3), 상계(3)*, 수락(3), 월계(3)	영신여(3)**	경기기공(3), 연평여자미디어(사립 2)**	노원구 (8교 23학급)	경기기공 증설(1)
			창동(3), 효문(3)		서울문화(3)	도봉구(3교 9학급)	
중부	5	15	성동(3)*			중구(1교 3학급)	
			경북(3)*			종로구(1교 3학급)	
			용산(3)*, 중경(3)	성심여(3)**		용산구(3교 9학급)	
강동 송파	13	37	강일(3), 둔촌(3), 명일여(3)**, 선사(3)	한영(3)		강동구(5교 15학급)	
			덕수(2), 방산(3), 문정(3), 문현(3), 잠신(3), 잠일(3), 창덕여(2)**		서울인공지능(3)	송파구 (8교 22학급)	
강서 양천	9	25	공항(3), 등촌(3), 세현(3), 수명(3)	한서(1)		강서구(5교 13학급)	
			금곡여(3)**, 신목(3), 신서(3)		서울금융(3)	양천구(4교 12학급)	
강남 서초	10	27	개포(3), 경기(3)*, 경여(3)**, 창덕(3)	서울세종(1), 풍문(3)		강남구 (6교 16학급)	풍문 증설(1)
			반포(3), 서울(3)*, 서초(3), 연남(2)			서초구(4교 11학급)	연남 감축(1)
동작 관악	10	24	동작(3), 수도여(3)**, 영등포(3)*		서울공(3)	동작구(4교 12학급)	
			구암(3), 삼성(3), 신림(3), 인현(1), 영락(1)	성보(1), 영락(1)		관악구 (5교 12학급)	인현 신설(1) 성보 신설(1) 영락 신설(1)
성동 광진	7	19	경일(3), 금호(3), 도선(3), 무학여(3), 성수(1)			성동구 (6교 13학급)	경일 증설(1) 성수 감축(1)
			광양(3), 자양(3)			광진구(2교 6학급)	
성북 강북	9	27	경동(3)*, 서울사대부(국립 3), 석관(3)	계성(3)		성북구(4교 12학급)	석관 증설(1)
			솔샘(3), 삼각산(3), 혜화여(3)**	영훈(3), 청문여(3)**		강북구 (5교 15학급)	
계	107	299	전년 대비 순증: +3교, +7학급, 107교 299학급 (국립: 1교 3학급, 공립: 86교 248학급, 사립: 20교 48학급)		6교 16학급 (공립: 5교 14학급 사립: 1교, 2학급)	신설: 3교, 3학급 / 증설: 6교 6학급 감축: 2교, 2학급	

바. 2025 유·초·중·고 특수학급 현황

교육 지원청	학교수	학급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본청소속고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동부	77 (+1)	145 (+3)	10	13	40 (+1)	74 (+2)	19	34 (+1)	8	24	0	0
서부	114 (+1)	200 (+4)	16	16	60	114 (+2)	27 (+1)	40 (+1)	11	30 (+1)	0	0
남부	116 (+2)	216 (+8)	16	17	56 (+1)	112 (+4)	30 (+1)	48 (+3)	14	39 (+1)	0	0
북부	87 (+2)	148 (+3)	9	9	44 (+1)	72 (+1)	23 (+1)	35 (+1)	8	24	3	8 (+1)
중부	49 (-1)	80 (-1)	4	4	31 (-1)	45 (-1)	9	16	5	15	0	0
강동송파	120 (+4)	193 (+5)	20 (+1)	23 (+1)	58 (+2)	91 (+3)	29 (+1)	42 (+1)	12	34	1	3
강서양천	98 (+1)	167 (+4)	15	18	55 (+1)	95 (+4)	19	29	8	22	1	3
강남서초	88	142 (+2)	17	18	42	72 (+1)	19	25 (+1)	10	27	0	0
동작관악	86 (+4)	148 (+8)	14	14	41 (+1)	80 (+5)	21	30	9 (+3)	21 (+3)	1	3
성동광진	61 (+2)	105 (+5)	8	8	36 (+2)	60 (+5)	10	18 (+1)	7	19	0	0
성북강북	72	135 (+3)	10	13	37	67 (+1)	16	28 (+1)	9	27 (+1)	0	0
계	968 (+13)	1,679 (+45)	139 (+1)	153 (+1)	500 (+8)	882 (+27)	222 (+4)	345 (+10)	101 (+3)	282 (+6)	6	17 (+1)

* 2024 대비 증감: 신증설 50학급, 감축 5학급, 순증 45학급



지 도

김흥미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최철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장



기 획

임금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기획팀 장학관
 이재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정팀 장학관
 공의석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운영팀 장학관
 류수남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특수교육지원팀 사무관



검 토

최민석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기획팀 장학사
 임호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기획팀 장학사
 이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기획팀 주무관
 김영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정팀 장학사
 최경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정팀 장학사
 김혜중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정팀 장학사
 김선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운영팀 장학사
 정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운영팀 장학사
 최승우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운영팀 장학사
 김예리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운영팀 행동중재전문관
 김남희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운영팀 행동중재전문관
 임석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특수교육지원팀 주무관
 이승엽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특수교육지원팀 주무관
 윤선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특수교육지원팀 주무관
 권은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특수교육지원팀 주무관
 양소연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특수교육지원팀 주무관



협력·집필

박재우 서울정민학교 교감
 김은의 서울방학초등학교 교사
 이희경 서울봉화초등학교 교사
 박준식 서울경운학교 교사
 양명운 서울정민학교 교사
 문형욱 경기고등학교 교사
 심은정 강동송파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정혜성 성동광진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김동현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지 원

이미영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기획팀 교육공무직
 유혜진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특수교육지원팀 교육공무직

인 쇄 일 : 2025년 2월
 발 행 일 : 2025년 2월
 발 행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신문로2가)